

제 13 장 참고사항

13.1 소하천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13.2 자문시행에 관한 사항

13.3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시행에 관한 사항

13.4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13.5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13.6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3.7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13 - 3

소하천 신규·변경·폐지(안)에 따른 주민 의견서

(양촌면)

소하천명	신규·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	비 고
결천	● 결천은 평소 물이 적지만 장마 시 물이 많이 내려 오고 주변 주택이 많아 위험이 있음	반영(2) 하고 배방영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삭제하세요!

Nonsan

채 운 면

논산

수신 논산시청(희망마을건설과장)

(경유)

제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신규·변경·폐지(안)에 관한 주민의견
제출

희망마을건설과-1327(2016. 1. 26.)호와 관련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채운면 주민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주민의견서 1부(별송), 끝.

논산시제윤면장



주무관 채운면 주민 부면장 이은영 민장 2016. 2. 11.
행정팀장 이은영 윤원수
협조자
시행 채운면-1716 (2016. 2. 11.) 협수 희망마을건설과-1906 (2016. 2. 11.)
우 32945 충청남도 논산시 채운면 채운로 41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8908 팩스번호 041-746-8909 / myc02016@korea.kr / 부분공개(6)
지출산 국책II 일 가장 균형있게, 건강하게

소하천 신규·변경·폐지(안)에 따른 주민 의견서

(채운면)

소하천명	신규·변경·폐지(안)에 대한 의견	비 고
장화소하천	장화소하천은 평소 유지 관리에 이해심이 있어 신규 소하천으로 지정 유지 관리 및 주민에게 많은 이점이 있으므로 수용함	장화소하천 이상 김 장로 장로
장화소하천	장화소하천으로 지정 준설작업등 유지 관리에 많은 노력이 될것으로 수용함	장화 1리 이상 박 대영
장화소하천	동계마을 외에는 자연물과 공방배수로써 소하천으로 지정 되어 많은 관심과 유지관리 필요함	장화리장 인 장로

13.1.2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nonsan

논 산 시

넷스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 제1회 소하천관리위원회(서면심의) 개최 알림

1. 논산시 소하천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과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논산시 소하천 신규지정·변경·폐지(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소하천관리위원회(서면심의)를 개최 하오니 불임 심의안건을 검토 하신 후 의견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의안건 : 논산시 소하천 신규지정·변경·폐지(안)에 대한 심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의견서 제출기한 : 2016.05.13.(금)

붙 임 : 1. 제1회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안건 1부.
2. 서면심의 조서 1부.
3. 소하천 신규지정·변경·폐지(안) 1부(별송). 끝.

논 산 시



수신자 논산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 귀하

주무관 서형일 희망마을건설 전결 2016. 4. 28.
과장 김치웅

협조자

시행 희망마을건설과-6531 (2016. 4. 28.) 접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논산시청)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6334 팩스번호 041-746-6179 / deli9037@korea.kr / 대국민 공개

함께해요 2016 경제총조사! 당신의 사업에 힘이 되도록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결과보고

2016. 6

 (주) 건 화
 (주) 드 림 E N G
 (주) 수 성 엔 지 니 어 링
 (주) 삼 욱 건 설 엔 지 니 어 링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2.0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결과

2.1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개요

- 심의안건 : 논산시 소하천 신규지정·변경·폐지(안)에 대한 서면 심의
- 관련법령 : 「소하천정비법」 제26조제3항에 의한 소하천 신규지정·변경·폐지 심의의결
 - 논산시 관내 신규소하천 지정 건의 대상 소하천(16개소) 중 법적기준을 만족하고 소하천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신규소하천(안)
 - 기 지정된 소하천(113개소) 중 법률상 소하천 지정기준을 만족하거나 또는 불만족하는 구간에 대해 소하천 구간 변경(안)
 - 기 지정된 소하천(113개소) 중 법적기준에 미달되고 평가등급이 낮은 소하천에 대한 폐지(안)

2.2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결과

위 원 명			검토 의견	조치계획			검토 결과	비 고
				반 영	일부반영	원안적용		
1	위원장	박귀의	-	-	-	-		
2	부위원장	김치웅	-	-	-	-		
3	위 원	정태화	2	2	-	-	원안가결	
4	위 원	이규환	1	-	-	1	원안가결	
5	위 원	윤희천	1	-	-	1	원안가결	
6	위 원	김민혁	4	4	-	-	원안가결	
7	위 원	심석구	11	9	-	2	원안가결	
8	위 원	이숙경	2	1	-	1	원안가결	
총 계			21	16	-	5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 신규지정·변경 및 폐지(안)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원안 가결함	□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를 위해 치수, 이수, 환경을 고려한 내실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되도록 과업을 진행토록 하겠음.	원안 적용

상기와 같이 기초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06. .

확인자 : 건양대학교

이 규 환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 신규지정·변경 및 폐지(안)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 제시한 소하천의 신규 지정·폐지안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를 위해 치수, 이수, 환경을 고려한 내실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되도록 과업을 진행토록 하겠음.	원안 적용

상기와 같이 기초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06. .

확인자 : 충남대학교

윤 희 천 (인)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 신규지정·변경 및 폐지(안)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 소하천의 신규 · 폐지를 계획할 때 소하천의 피해이력조사 및 주민탐문조사 등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홍수량 규모의 정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후 지정 · 폐지 결정에 반영되어야 함.	□ 금회 소하천의 신규·지정·폐지안 계획시 관련계획 검토, 현지조사(2차), 해당 읍·면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소하천 신규·지정·폐지안을 제시하였음. □ 금회 폐지대상 5개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체길이가 500m이하인 소하천을 대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현지조사 및 소하천 제해이력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지, 농경지 등 보호대상이 없는 소하천을 선정하였음.	반 영
□ 유로의 사용목적 및 관리주체에 대한 조사가 면밀히 이루어져야 함. 경지정리배수로 및 용배수로 등의 사용목적 및 관리주체를 파악하고, 주민의견수렴 및 치수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홍수피해 위험을 내제하고 있는 시설물 등은 관련자료를 조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소하천 지정 · 폐지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금회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시 소하천과 배수로의 사용목적 및 관리주체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통해 소하천 신규·지정·폐지토록 하겠으며, 주민의견 수렴, 치수 안정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내실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음.	반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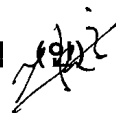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안)을 검토하여 소하천 구간의 명확한 지정이 이루어져 구역의 중복 및 미지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수립된 기본계획 수립 여부, 하천구역, 현황, 지적 등을 확인하여 중복 및 단절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겠음.	반 영
□ 저수지 등이 연계되는 소하천의 경우, 관리자의 의견을 받아 논산시, 농어촌공사 등의 관리주체, 상·하류의 연계 관련 부분, 지형학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소하천 구간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저수지 등이 연계되는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안)을 검토하여 논산시, 농어촌공사 등의 관리주체, 상·하류의 연계 관련 부분, 지형학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소하천 구간을 선정토록 하겠음.	반 영

상기와 같이 기초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06. 16.

확인자 : (주)드림이엔지

김 민 혁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 신규지정·변경 및 폐지(안)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 소하천 현황에 대한 기술이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움	□ 금회 소하천의 신규·지정·폐지안 계획시 관련계획 검토, 현지조사(2차), 해당 읍·면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소하천 신규·지정·폐지안을 작성하였으며, 기수립 시점, 중점 현황을 검토한 후 소하천 구간을 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향후 파악구간 최종 결정시 현황측량 완료 후 소하천 세부현황 조사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반 영
□ 신규3(116), 신규8(121)의 경우, 상·하류에 주거지가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치수안정성 확보와 주민생활기반의 개선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제외 여부 검토 바람	□ 금회 신규 대상 16개소를 조사하여 5개소를 신규 지정토록 하였음. □ 신규3, 신규8의 경우, 일부 주거지가 위치하고 있으나 대부분 경지정리된 농경지 배수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로 이용되고 있어 금회 신규 대상 소하천에서는 제외되었음. (2017년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수립 지침 참조)	원 안 적 용 별첨 #1
□ 경계소하천(무주천 : 계룡시)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구간을 확실히 결정하여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개수사업 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홍수피해가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경계소하천(무주천:계룡시)의 경우,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구간을 결정하여 소하천정비계획은 논산시에서 수립하고 하천개수사업 등 유지관리는 계룡시에서 시행토록 협의하겠음.	반 영
□ 소하천 상류부에 저수지가 위치하는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저수지를 제외하더라도 소하천구역은 저수지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됨	□ 소하천 상류부에 저수지가 위치하는 경우, 저수지 여수로 하단 낙차공까지를 소하천 구간으로 결정하였으며, 저수지 구간의 소하천 구역 포함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 후 결정토록 하겠음.	반 영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 고정천(연산면)의 경우, 사진상 구간 변경시점이 U형 개거, 도로측 구는 아니므로 배후지역건, 홍수 규모, 소하천기준 만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함.	□ 고정천 기존시점부는 U형 개거 (0.6×0.6m) 형태로 소하천 외형기준(폭 2.0m 이상)에 미달되며, 농경지 배수로 형태로 금회 과업구간에서 제외토록 하였으며, 홍수량, 적정 통수단면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실시 한 후 제외 여부를 판단하겠음.	반 영
□ 소하천에서 제외되는 주곡천, 통외천, 주내천, 왕우천, 작은솔천, 행교천, 지정천 등은 제외구간에 대한 홍수량, 적정 통수단면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실시 한 후 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함	□ 소하천 연장이 축소되는 구간은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소하천 지정 기준을 검토한 후 관련계획 검토, 현지조사(2차), 해당 읍·면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소하천 구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제시하였으며, 향후 홍수량, 적정 통수단면에 대하여 개략적인 검토를 실시 한 후 제외 여부를 판단하겠음.	반 영
□ 수락천(별곡면)의 경우, 수락저수지 상류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제외하였으나, 관리주체가 다르더라도 수계의 일관된 관리를 위해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	□ 수락천에 대한 일관된 관리를 위해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소하천 구간을 결정하겠으며,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 협의 시 개수사업 등 유지관리는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시행토록 협의하겠음.	반 영
□ 만목천(별곡면)의 경우, 사방댐 상류부에 대해서 하폭 등을 검토하여 하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고려	□ 만목천 사방댐 상류부에 대한 소하천 지정기준, 농경지 및 주거지 등 보호면적 등을 확인한 후 소하천 구간연장을 검토하겠음.	반 영

검 토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 독방골천(벌곡면)의 경우, 시점 상류부에 대해서 하폭 등을 검토하여 하천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고려	□ 독방골천 시점 상류부에 대한 소하천 지정기준, 농경지 및 주거지 등 보호면적 등을 확인한 후 소하천 구간연장을 검토하겠음.	반 영
□ 폐지하천인 절천(양촌면)의 하류부에 마을이 위치함. 재해예방 차원에서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에 대해 검토 바람	□ 소하천정비법(동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전체길이가 500m이하인 소하천을 대상으로 폐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금회 폐지대상인 절천의 경우, 현지조사 및 소하천 재해이력조사, 해당읍면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금회 소하천 폐지대상으로 결정하였음.	원안 적용
□ 신규5(벌곡면)의 경우, 낙차보 상류까지 소하천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항공사진 상 하폭 2m 이상으로 보임)	□ 신규5 시점 상류부에 대한 소하천 지정기준, 농경지 및 주거지 등 보호면적 등을 확인한 후 소하천 구간연장을 검토하겠음.	반 영

상기와 같이 기초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06. 21 .

확인자 : (주)상지ENG

심 석 구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 신규지정·변경 및 폐지(안)

검 토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 송정천(연산면)의 변경 시점보다 상류에 주거지 등이 위치하므로 토지이용 형태를 고려하여 시점 부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필요	□ 송정천은 소하천 외형기준 만족 및 상류부 주거지의 위치여부를 고려하여 249m 연장하였으며, 변경시점은 노면유입에 의한 수로 시점부임.	반 영
□ 그 외 하천에 대한 신규 지정 및 폐지사유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됨	□ 효율적인 소하천 관리를 위해 치수, 이수, 환경을 고려한 내실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되도록 과업을 진행토록 하겠음.	원안 적용

상기와 같이 기초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 06. 17.

확인자 : (주)우일ENG 이 숙 경 (인) 

13.2 자문 시행에 관한 사항

13.2.1 홍수량 산정의 적정성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nonsan

논 산 시

논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 관련 홍수량 산정 자문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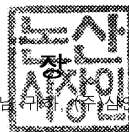
1. 우리시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자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과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계획 홍수량 산정에 대한 적정성 자문을 서면검토 요청드리오니 불임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1. 검토의견 서식 1부.

2. 홍수량 산정 자료(별송) 1부. 끝.

논 산 시



수신자 한남대학교 정태성 교수님 귀하, 호서대학교 정건희 교수님 귀하, 논산시 김형준 귀하

주무관

김윤호

주무관

정안석

희망마을건설 전결 2017. 9. 29.
과장 조삼구

협조자

시행 희망마을건설과-15838 (2017. 9. 29.) 접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210번길 9, (내동, 논산시청)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6334 팩스번호 041-746-6179 / fly0130@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논산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안 건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설계수문량 결정(안)

◎1차 자문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위 원 명	검토 의견	조치결과			비 고
		반 영	추후반영	원안반영	
1 한남대학교 정 태 성	7	7	-	-	
2 호서대학교 정 건 회	1	-	-	1	
3 (주) 삼 안 김 형 준	9	9	-	-	
계	17	16	-	1	

지문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설계수문량 결정(안)

자문위원	자문의견	조치계획	비고
정태성 위원장	정비계획으로 인한 홍수량과 지방하천의 50년 빈도 홍수량과 비교·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과도한 개·보수는 지방하천의 홍수량 증가로 제하위협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최근 고시된 「논산·강경·노성권역 하천기본계획(2017. 04)」 28개 지방하천 180개 산정지점에 대하여 비유량 평균값을 산정한 결과 50년 빈도 19㎢/s/㎞, 계획빈도(80년 ~ 100년) 21㎢/s/㎞로 금회 논산시 소하천 계획빈도 50년에 대한 비유량 평균값 22㎢/s/㎞와 비교시 본류인 지방하천과의 비유량값과 비슷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근회 산정한 홍수량 적정성 검토를 통해 향후 소하천개수 계획 수립시 본류인 지방하천의 제하위협성을 최소화하도록 과도한 소하천 개·보수는 지양하도록 계획하겠음.	반영 (첨부#1)
	비유량을 산정해서 과대하게 나타나는 하천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 과업대상 소하천의 기수립 대비 비유량 평균증가율은 1.09로 분석되었으며, 기수립 대비 20% 이상 홍수량이 증가하는 소하천은 총 31개소로 조사되었음. ⇒ 터센망도 상 부여관측소의 기수립 대비 확률강우량 증가, 토지이용상태 변화에 따른 유출곡선지수 증가, 도달시간 감소 등이 홍수량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반영 (첨부#2)
	유입시간 10분을 고려한 것에 대하여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유역의 최원점에서 하도중점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한 결과와 검토바랍니다.	⇒ 유입시간 고려에 따른 홍수량 비교를 위해 유입시간 미고려시 홍수량을 산정하여 비교·검토한 결과, 유입시간 고려시 보다 평균 8.0㎢/s(23.5%), 최대 29.0㎢/s(37.8%) 증가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상기와 같이 소하천의 경우 유역면적이 작고 유로연장이 짧아 유입시간 미고려시 홍수량이 과다 산정되어 급회 도달시간 산정시 유입시간 10분을 적용하였음.	반영 (첨부#3)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설계수문량 결정(안)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정태성 위 원	• 비유량 증가율을 각 하천에 대하여 계산해서 평균보다 과도하게 높게 나오는 하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금회 비유량 / 기수립 비유량)	⇒ 금회 산정한 소하천의 기수립 대비 비유량 평균값 비율 (금회 비유량 / 기수립 비유량)은 1.09로 분석되었으며, 기수립 대비 20% 이상 홍수량이 증가하는 소하천은 총 31개소로 조사되었음. ⇒ 기수립 대비 홍수량이 증가하는 31개소 소하천에 대한 홍수량 증가 사유를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반 영 (첨부#2)
	• 과거 피해이력 조사결과를 분석결과외 타당성 검증에 활용하기 바랍니다. 풍수해지감종합계획 결과를 반드시 활용 바람.	⇒ 향후 금회 과업대상 소하천별 제해피해 이력조사, 풍수해 지감종합계획 내용 반영 등 세부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금회 산정한 홍수량에 대한 타당성 검증 후 소하천 개·보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하겠음.	반 영
	• 유역면적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으나 홍수량이 크게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 재검토 바랍니다. 감소한 지역에 대해서도 검토	⇒ 기수립 대비 10% 이내로 유역면적이 거의 변화가 없는 소하천 중 홍수량이 기수립 대비 20% 증가하는 소하천은 24개소이며, 감소하는 소하천은 4개소인 것으로 검토되었음.	반 영 (첨부#4)
	• 기수립에 비해서 크게 증가하거나 비유량이 높은 하천에 대해서는 사유를 보고서에 제시하기 바랍니다.	⇒ 기수립 대비 홍수량이 증가, 비유량이 높은 소하천에 대한 홍수량 증가 사유를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반 영 (첨부#5)

상기와 같이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12. 27.

자문위원 : 정 태 성



지문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설계수문량 결정(안)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형준 위 원	<제2장 과업범위 조정> 과업범위의 조정(p.2.23)에서 연무읍 소재 큰용맹이천(L=2.338km)이 기능 상실 및 고속도로 축구로 이용되는 사유를 들어 지정폐지 되었는데, 유역면적(1.78km²) 및 소하천 연장을 고려해 볼 때 지정 유지할 사유가 있는 바, 해당 소하천의 현황 및 향후 도로시설로 유지관리 측면 필요성 등에서 보다 상세한 지정폐지의 근거를 작성하기 바람.	⇒ 급회 지정폐지 대상인 큰용맹이천의 경우 상류부 대부분이 논산 양지 제2농공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소하천 연장이 감소하였으며, 중·하류부 대부분 구간이 호남고속도로 축구로 사용되고 있어 급회 큰용맹이천 지정폐지를 통해 작은용맹이천을 본류로 하여 편입시키도록 하였음. ⇒ 급회 과업범위의 조정시 지정 폐지 대상 소하천 5개소에 대한 지정 폐지 사유를 작성하여 보완하였음.	반영 (첨부#1)
	<제4장 기초현황 조사> 소하천별 하도 특성조사가 누락되어 있는 바, 하도의 형태(평면, 횡단, 종단 등)를 기수립과의 비교를 통해 하도의 변화를 수록하기 바람.	⇒ 과업구간이 확정된 119개소 소하천에 대한 평면, 횡단, 종단 등 기수립과의 비교를 통해 소하천별 하도의 변화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관련자료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해 하도의 정비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 파기 및 최근 소하천 정비공사 등 계방 공사연혁을 조사하여 하도의 정비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설계수문량 결정(안)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형준 위 원	• 소하천의 중점부와 분류하천의 하천경계 구분 제시가 필요함.	⇒ 최근 논산시 소하천의 분류인 「논산·강경·노성천권역 하천기본계획(2017. 04)」의 하천구역 고시가 완료되어 본류하천의 하천경계 구분내용을 소하천별로 확인, 작성후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반 영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지침(국민안전처, 2016. 09)의 표준목차인 「4.5절 피해현황 및 소하천 정비연혁 조사」, 「4.7절 관련계획 조사」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수록하기 바람.	⇒ 관련계획 및 계획발생 현황 등을 조사하여 「4.5절 피해현황 및 소하천 정비연혁 조사」, 「4.7절 관련계획 조사」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반 영
	<제8장 홍수량 산정 및 유량분석> • 금회 논산시 소하천의 홍수량 산정은 「월계홍수량 산정요령 2012, (구)국토해양부」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산정한바, 기수립과의 비교를 통해 홍수량 증감 원인을 분석·제시하고, 홍수량 산정인자 값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금회 산정한 소하천의 기수립 대비 비유량 평균값 비율(금회 비유량 / 기수립 비유량)은 1.09로 분석되었으며, 기수립 대비 20% 이상 홍수량이 증가하는 소하천은 총 31개소로 조사되었음. ⇒ 기수립 대비 홍수량이 증가하는 31개소 소하천에 대하여 홍수량 산정인자값 확인을 통해 홍수량 증가 사유를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반 영 (참부#2)
	• 강우강도식 유도에서(p6-22) 강우강도식으로 전대수다항식을 채택하였는데, 6차 전대수다항식의 결정계수 값은 높지만 IDF 곡선을 도식해보면 지속시간 60분 이내에서 왜곡되므로 도달시간이 짧은 소하천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60분 이내의 지속시간에 대해서 왜곡이 적은 General식에 대해서도 보고서에 비교/검토하기 기술하기 바람.	⇒ 금회 강우강도식으로 채택한 전대수다항식의 IDF 곡선을 확인한 결과, 지속시간 60분 이내에서 왜곡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관측소별 단·장기간 구분을 통해 General식을 추가·분석하였음. ⇒ 금회 채택한 전대수다항식이 단·장기간 구분한 General식보다 결정계수 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 영 (참부#3)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설계수문량 결정(안)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형준 위 원	유출곡선지수(CN)값은 토지이용상태에 따라 유역의 상류부로 갈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류부로 갈수록 CN이 커지는 유역은 유출율이 역전되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검토하기 바람. (표 6.2-11) 예) 광석면 사월천, 노성면 가곡천, 연산면 어은천 등	⇒ 소하천별 유출곡선지수(CN) 확인 결과, 논산시에 위치하는 소하천은 하류 대부분은 농경지, 상류부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소하천의 경우 유역 하류대비 상류쪽에 유출율이 높은 토양형으로 구성된 것으로 검토되어 유역 상류부의 CN값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홍수량 산정지점 기준으로 본류 홍수량 증가량보다 비교적 큰 홍수량이 유입되는 지류 직하류 유역이거나, 하류지점과 유역면적 차이가 거의 없는 구간으로 일부 홍수량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지점은 큰 홍수량을 계획홍수량으로 결정하였음.	반영 (첨부#4)
	유출곡선지수(CN)는 소수값으로 분석되더라도 결정값은 정수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하기 바람. 예) 90.03 → 90	⇒ 유출곡선지수(CN)는 결정값은 정수로 수정하였음.	반영 (첨부#5)

상기와 같이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12. 27.

자문위원 : 김 형



자문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설계수문량 결정(안) 자문위원 : 정 건 회 (인)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정건회 위 원	• 시강우 자료 가용여부를 살펴보면, 유역 내 위치한 강정과 연산관측소의 경우 결측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96년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존재하며 기간연도가 아닌 결측연도만 고려한다면 92년 이후에는 자료가 모두 존재합니다. 이를 고려하면 최소한 최근 20년의 자료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기상청 자료만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금회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해 시강우 보유년수, 시강우 자료의 가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상위계획인 「논산·강정·노성천권역 하천기본계획(2017. 04)」에서 선정된 우량관측소(부여, 대전, 금산, 전주관측소) 채택 현황 등을 참고하여 시우량 보유년수(30개년 이상) 및 결측·기각 자료에 대한 시우량 자료의 신뢰성 검증을 통해 금회 우량관측소로 기상청 관할 부여, 대전, 금산관측소로 선정하였음. ⇒ 다만, 유역 내 위치한 강정, 연산관측소의 결측·기각 자료를 제외한 시우량 보유연도가 20개년 이상으로 해당 관측소에 대한 강우 경향성 검토, 신뢰성 검증을 통해 시우량 가용여부를 검토하였음.	원안반영 (첨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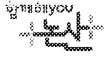
상기와 같이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12. 28.

자문위원 : 정 건 회 

13.2.2 소하천 개수계획의 적정성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논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대한 자문 요청

1. 우리시 발전에 협조해주시는 자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과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코자 불임과 같이 자문을 구하오니 2018년 11월 22일까지 검토의견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자문안건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관련 타당성 검토

불임 가. 개수계획 용역보고서(별첨) 1부.
나. 자문의견서(서식) 1부. 끝.

논 산 시



수신자 건양대학교 윤여진 교수님 귀하, (주)한국종합기술 김영준 대표이사님 김형준 귀하

주무관 최유신 하천팀장 김용신 건설정책팀장 대결 2018. 11. 9. 희망마을건설 전결
협조자 박광용 과장

시행 희망마을건설과-18455 (2018. 11. 9.) 접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6333 팩스번호 041-746-6179 / choiyushin@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노산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안 건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2차 자문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위 원 명	검토 의견	조치결과			비 고
		반 영	추후반영	원안반영	
1 건양대학교 윤 여 진	12	12	-	-	
2 (주) 삼 안 김 형 준	4	4	-	-	
3 (주) 한국종합기술 김 영 준	71	54	-	17	
계	87	70	-	17	

지문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지문위원	지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윤여진 위 원	• 소하천의 미지정 구간이 인근 지자체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하천이 단절되지 않도록 조치	⇒ 과업대상 소하천의 과업범위 조정시 분류하천(국가, 지방) 및 저수지 구간 등 단절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조사를 통해 소하천 연장을 조정·결정하였음.	반영
	• 기 수립된 계획에 비하여 혹시 하상경사가 변하는 구간은 없는지? 혹 있다면 이에 대한 원인분석, 수리시설물(형단교량)에 대한 안정성검토, 유지관리방안 등이 필요	⇒ 금회 과업대상 소하천의 경우 과도한 유로변경, 하도준설 계획이 없어 기수립 대비 하상경사가 크게 변하는 구간은 없으며, 향후 기초소하천 관리위원회 개최전 “제7장 하상 변동 예측”을 통해 하상변동량 증감분석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장래 평형하상고를 제시하였음. ⇒ 또한, 수리시설물(형단교량, 낙차공, 취수보)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영
	• 수리개산시 조도계수의 적용을 일괄적으로 적용? 추후 개수된 경우에는 변화므로 이 점도 고려	⇒ 금회 수리개산시 적용한 조도계수는 원지조사(하도상황, 하상재료) 내용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과도한 수리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수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조도계수를 참고로 「소하천 설계기준」의 하상조건 및 형태에 따른 조도계수 기준값을 적용하였음. ⇒ 개수된 축제지구의 경우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 변화여부를 검토하여 개수후 조도계수를 수정 보완하였음.	반영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윤여진 위 원	• 호안공법 선택시 해당 소하천에 맞는 공법으로 시공(일몰처리 아님)	⇒ 소하천 계획지구별 표준단면 결정은 치수적 안전, 안정하도 유지, 쾌적한 환경조성 및 지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안 비탈경사를 1:0.3 ~ 1:2.0로 결정하였으며, 계획지구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호안형식을 제시하였으나, 추후 세부 실시설계시 생태적합도 및 경관 등 해당 지구의 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적절한 공법이 선정되도록 보고서에 관련내용을 제시하였음.	반 영
	• 종합적으로 환경 친화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이시기후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수행 일부 소하천 구간에 축사시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 등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 과도한 유로변경, 직강화 등 인위적인 계획보다는 현재 유로를 최대한 이용한 법선계획, 소하천구역 편입을 통한 홍수터 활용(습지조성 등), 친환경적인 호안제시 및 제거설되는 낙차공, 보를 자연형 여울로 설치토록 하여 환경 친화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음. ⇒ 금회 산정한 확률강우량 값은 「미래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운영기준(2017. 12,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방재성능목표를 상회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최근 이상강우를 고려 계획빈도를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하여 치수적 안정성을 확보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 일부 소하천 구간 축사시설의 경우, 장기적인 소하천 환경계획 수립을 고려하여 소하천 구역 편입 등으로 시설물 이전 계획을 협의토록 하겠음.	반 영
	• 보고서에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자문내용 등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시 진행될 과정을 수록하여 관련사항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추가	⇒ 주민설명회 및 관련기관 협의, 자문내용 등을 보고서 “제12장 기타사항”에 작성하여 수록하겠음.	반 영

□ 안건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윤여진 위 원	•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 홍수량 대비 독마루폭을 2.5-3.0m로 적용하였으나 주민들 이용이 빈번한 마을진입로 등은 기존 도로폭을 적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필요	⇒ 금회 소하천 개수계획시 독마루폭 최소기준을 적용하여 농경지의 경우 독마루폭 2.5m를 적용하였으며, 마을 진입로가 제방도로 겸용으로 이용되는 계획지구는 기존 도로 폭을 유지토록 추가검토후 반영하겠습니다.	반 영
	• 소하천개수계획 평면 확인결과, 본류하천 합류부에서의 지류 계획법선이 일치하지 않는 소하천이 확인되는 바, 본류와 지류의 계획법선을 확인하여 수정	⇒ 과업대상 소하천 하류부 법선계획시 본류하천 계획법선과 일치하도록 확인하여 수정 · 보완하겠습니다.	반 영
	• 소하천 도면(평면, 종단, 횡단)을 향후 소하천 대정부도 작성 등을 고려하여 통일	⇒ 읍면별 소하천에 대한 부도 도면(평면, 종단, 횡단)을 통일하여 수정 · 보완하겠습니다.	반 영
	• 대상 소하천이 12개 읍면, 120개 소하천으로 부도에 목차 및 도면 페이지를 작성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완	⇒ 대상 소하천의 도면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도에 목차 및 도면 페이지를 수록하겠습니다.	반 영
	• 제방축제 계획시 계획법선 및 소하천 구역 등을 검토하여 맹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잔여토지 매입을 통한 소하천 구역 편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하천별 제방축제 계획을 확인하여 일부 잔여토지가 발생할 경우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토록 수정 · 보완하겠습니다.	반 영
	• 소하천별 세부적인 개수계획 부분의 시설물 계획 등은 향후 기초심의 전에 검토하여 보완할 것	⇒ 소하천별 세부적인 시설물 계획을 검토하여 기초심의 전에 수정 · 보완하겠습니다.	반 영

상기와 같이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자문위원 : 윤 여 진



자문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형준 위 원	※금회 논산시 소하천 소하천개수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다만, 향후 진행될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시행전에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을 정리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였음.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16. 09 행정안전부)” 보고서 표준목차에 이거 보고서 작성을 수정 보완하였음.	반 영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2016. 09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 표준 목차에 이거 보고서를 작성하기 바람.	⇒ 논산시 소하천 분류하천 대부분이 최근 고시된 “논산천 권역 국가하천, 지방하천”으로 하천구역을 확인하여 4.25 국가·지방하천 접속부 현황 표에 상세히 수록하였음.	반 영
	• 보고서 「제4장 기초현황 조사」 4.2 하도특성 조사에서 4.2.5 국가·지방하천 접속부 현황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바, 분류하천의 하천구역을 확인하여 접속부 현황을 보고서에 상세히 수록하기 바람.	⇒ 생태환경이 우수한 지역 소하천은 소하천구역 편입을 통한 홍수터 활용 등 친환경적인 계획을 검토하였으며, 치수적으로 안전한 산지 계곡부는 인위적인 계획을 지양하여 보전구역으로 설정토록 하겠음.	반 영
	• 논산시의 경우 남서지역은 농경지, 북동지역은 산지 형태를 띠고 있어 해당 읍면별로 소하천의 지형특성을 고려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대둔산, 수락계곡 등이 위치한 벌곡면의 경우,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실적인 제방 축제 계획보다는 소하천 구역 편입을 통한 홍수터 활용(습지)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형준 위 원	• 「제8장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8.5 소하천 시설물 계획총괄에서 읍·면별 및 총괄 집계를 추가로 제시하고, 보고서의 [표8.5.1 제방계획, 표8.5.2 하천시설물 계획] 내용과 도면(사색도, 중·형단면도)이 상이한 바, 검토후 수정·보완하기 바람.	⇒ 소하천 시설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읍·면별 및 총괄 집계를 보고서에 제시하였으며, 보고서 및 부도 도면 내용이 일치하도록 추가 보완·수정하였음.	반영

상기와 같이 자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자문위원 : 김 형 준



자문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자 문 의 견	조 치 계 획	비 고
김영준 위 원	<보고서> • p.2-150 소하천 지정기준 제시 필요	⇒ 논산시 관내 하천 전수조사 및 읍면별 의견을 취합하여 소하천 지정기준(소하천정비법 제2조)을 만족하는 신규 소하천 후보지 중 12개소를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결정하였으며, 소하천 지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제시하겠습니다.	반 영
	• p.4-16 그림 [4.1-1] 유역포고 분포도, [4.1-13] 유역경사 분포도, [4.1-28] 토양도 등 현황과악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함.	⇒ 읍면별 소하천별 현황과악이 될 수 있도록 유역포고 분포도, 유역경사 분포도, 토양도 그림참도를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반 영
	• p.4-330 하천별 유역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그림 4.4-46 하천유역 구분도를 유역 구분이 가능하도록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반 영
	• p.6-32-48 수정천, 장전천, 거정천 등 기수림 계획과 유역면적이 크게 상이한 소하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기수림과 유역면적의 변화가 큰 소하천에 대한 증감사유를 보고서에 명기하겠습니다	반 영
	• p.6-49-60 홍수량 산정지점 보완이 필요함.	⇒ 홍수량 산정지점 및 유역경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읍면별 홍수량 산정지점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반 영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영준 위 원	• p6-135-259 대홍천 등 홍수량 산정지점 DH5 지점 홍수량 산정치가 1CMS로 산정된 바, 홍수량 산정값이 아주 작게 산정된 지점에 대해서는 계획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대홍천 DH5 지점은 유역면적이 0.03km²으로 작고 대부분 하상경사가 완만한 농경지 구간으로 홍수량 산정값이 작게 나온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철도와 지방도 23호선이 소하천을 횡단하여 금회 산정지점을 추가로 산정하였음. ⇒ 또한, 홍수량 산정값이 아주 작게 산정된 소하천에 대해 재검토하여 홍수량 감소원인을 보고서에 수록하겠음.	반영
	• p8-33-43 양지천 등 계획하폭이 현 하폭보다 작은 소하천의 계획하폭은 재 확인 필요함.	⇒ 횡단 및 수리계산 자료(Ras)를 확인하여 현재 및 계획하폭을 보고서에 수정 · 보완하겠음.	반영
	• p8-197 “〔표8.2.8〕 계획홍수위, 하폭 및 시설제방고”에서 하류부가 상류보다 하폭이 작은 경우는〔예, 대홍천(No.28-29)〕계획인 하여야 할 것임.	⇒ 횡단 및 수리계산 자료(Ras)를 확인하여 현재 및 계획하폭을 보고서에 수정 · 보완하겠음.	반영
	• p8-224 구암천 No.25+12.6 하폭 시설제방고 재확인 필요.	⇒ 해당 보고서 내용 확인 후 수정 보완하였음.	반영
	• p8-234 상도1천 등 계획하폭을 9.93m ~ 6.72m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니 재확인 바람.	⇒ 횡단 및 수리계산 자료(Ras)를 확인한 결과, 해당지점은 산지부로 현재 및 계획하폭을 정수로 수정하였음	반영
	• p8-300 보름지천(하폭이 6-22m)등 하폭이 급변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개수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임.	⇒ 횡단 및 수리계산 자료(Ras)를 확인한 결과 해당지점은 산지부로 현재 및 계획하폭을 보고서에 수정 · 보완하겠음.	반영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 p8-353 제방비탈경사 1.0.3-1.2 적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2018. 3.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방의 비탈경사는 1:2.0보다 완만하게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많은 토지의 소하천 편입이 예상되는 바,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제방 비탈경사를 고려하여 1:0.3-2.0로 적용하였음.	반 영
	• p8-446 기존시설물 현황표에서 ‘낙차보’ 용어를 보·낙차공으로 수정요망.	⇒ 기존시설물 현황표에서 낙차보를 낙차공과 취수로로 구분하여 보고서에 수정·보완하겠음.	반 영
	• p8-529 사방댐의 계획내용 있는지 확인바람.	⇒ 논산시 관내 사방댐은 표고가 높고 경사가 급한 지역인 벌곡면, 양촌면, 연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방댐 시설 현황은 보고서 “제4장 기초현황 조사”에 수록되어 있으며, 금회 별도의 사방댐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음.	반 영
김영준 위 원	<부 도> • 공통사항 - 평면도, 종단도, 횡단면도 작성이 면별로 일치하지 않아 통일 필요. - 평면도상에 배수시설, 표석매설 등의 표시가 누락됨 - 평면도상에 각 지구별 개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표시방안 보완 필요 - 종단면도 작성 보완 (예, 수치들이 보이도록 조정) - 횡단면도 작성 보완 (예, 현하폭 및 계획하폭 제시, 횡단면도 구성시 도면이 너무 작아 잘 보이도록 재구성 필요 등)	⇒ 평면도, 종단도, 횡단면도 도면 형식을 통일하여 수정하겠음. ⇒ 평면도상 배수시설, 표석매설을 추가로 표시하겠음. ⇒ 평면도상 각 지구별 개수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방안을 수정·보완하겠음. ⇒ 종단면도의 수치 등이 잘 보이도록 수정·보완하겠음. ⇒ 횡단면도의 수치 등이 잘 보이도록 수정·보완하겠음.	반 영 반 영 반 영 반 영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영준 위 원	- 만곡부 주변은 하폭을 확대하여 수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 하천개수계획 수립시 기존 하도 단면이 잠식이 되지 않도록 검토 필요 (예, 모내천 No.3 구간(황단면도 참조)) - 하류부 하폭이 상류보다 작은 선형 재 검토 필요	⇒ 만곡부 주변은 현황 및 계획하폭을 확인하여 수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소하천별 평면 및 횡단을 확인하여 기존 하도 단면이 잠식되지 않도록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반 영 반 영
	- 단면 급확대 및 급축소되지 않도록 선형 조정 필요(예, 대홍천 No.30 구간 하폭 급축소 구간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특이구간 등에 대한 검토후 보고서에 수록(예, 대홍천 대홍보축과2지구 소하천구역으로 편입 및 고수호안 계획 설정 사유 등 제시)	⇒ 소하천별 평면 및 횡단을 확인하여 재검토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소하천별 평면 및 횡단을 확인하여 재검토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대홍천 보축과2지구는 금회 논산시에서 시행중인 「대홍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설계내용을 반영한 계획으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 예정이며, 습지계획을 반영한 고호지구로 계획하였으며, 관련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겠습니다.	반 영 반 영 반 영
	• 하폭 축소 및 급확대 재확인 구간 - 양지천 No.35 구간, 안심천 No.0 구간(안심교 확장 검토)	⇒ 양지천 No.35지점은 지류인 당산소하천 합류부, 계획하폭 변화구간으로 범선조정을 통해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안심천 No.0지점 안심교는 계획하폭을 고려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반 영 반 영
	- 모내천 No.0 구간(모내교 확장 검토), 도장천 No.2 구간	⇒ 모내천 No.0 지점 모내교는 계획하폭을 고려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도장천 No.2 지점은 도로 복개BOX 구간으로 여유고 기준은 만족하나, 선형조정을 통해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반 영 반 영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지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영준 위 원	- 지물천 No.30+30 구간(시점부), 사월천 No.25 구간(좌안부)	⇒ 지물천 No.30+30(시점부) 지점은 기존 구조물과의 연결부 구간으로 현황을 고려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음. ⇒ 사월천 No.25(좌안부) 지점은 현황 고려시 단면확대에 의한 수리변화가 미미하여 당초 계획법선을 적용하였음.	원안반영 원안반영
	- 독운천 No.0+29 구간(교량접속부)	⇒ 독운천 No.0+29(교량접속부) 지점은 기존 구조물과의 연결부 구간으로 현황을 고려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음.	원안반영
	- 독운천 No.36+15 구간(독운5교 교량부)	⇒ 독운천 No.36+15(독운5교 교량부) 지점은 현황 고려시 단면확대에 의한 수리변화가 미미하여 당초 계획법선을 적용하였음.	원안반영
	- 구암천 No.16구간, 용림천 No.25구간(좌안부 유선형으로 선형조정 검토), 구암천 구암5교 확장검토	⇒ 구암천 No.16 지점은 현황 고려시 단면확대에 의한 수리변화가 미미하여 당초 계획법선을 적용하였음. ⇒ 구암천 구암5교 확장(7m→10m)을 반영하였음 ⇒ 용림천 No.25지점 좌안부 유선형으로 선형을 변경하였음.	원안반영 반 영 반 영
	- 중골천 No.9 구간(산지부 처리 및 유선형 검토)	⇒ 중골천 No.9 지점은 산지부 현황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법선을 적용하였음.	원안반영
	- 석중천 No.3 구간(유선형 검토) - 통폐천 No.10, 13 구간(산지부 처리검토)	⇒ 석중천 No.3 지점은 도로 용벽에 의해 유로가 급변하는 구간으로 사유지 편입을 최소로 하기 위해 좌안측 축제 구간을 기존 제방에 따라 계획하였음. ⇒ 통폐천 No.10, 13은 저수지로 저수지 옆 제방으로 급회 제방 선형을 계획하였음.	원안반영 원안반영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영준 위 원	- 산성천 No.12+21 구간(박스 확장 등 검토)	⇒ 산성제2BOX교는 국도 23호선 BOX교로 경간장 및 여유 고가 부족하나, 교량 확장시 공사비가 과도해 금회 계획에서 존치로 계획하였으나,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확장여부를 검토하겠음.	반영
	- 한천 No.17+16 구간(박스 확장 등 검토)	⇒ 한천교의 경우 지방도 691 교량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중인 하천임. 한천교는 교량 연장 및 여유고가 충분한 교량으로 존치로 계획하였음.	원안반영
	- 음지뜸천 No.17-18 구간(좌안부 제방보강 필요성 검토)	⇒ 음지뜸천 No.17-18 좌안부는 산지로서 별도의 제방보강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	원안반영
	- 삼거천 No.5 구간, 백석천 No.28+43 구간(유선형 검토)	⇒ 삼거천 No.5 지점은 계획하폭을 고려하여 선형을 변경하였음. ⇒ 백석천 No.28+43 지점은 계획하폭을 고려하여 선형을 변경하였음.	반영
	- 어은천 No.19 구간 (기존 유로와 접속처리 선형 검토)	⇒ 어은천 No.19 지점은 기존 유로와 접속처리를 고려하여 선형을 변경하였음.	반영
	- 고정천 No.12-15 (단면확장 검토)	⇒ 고정천 No.12-16 구간 계획하폭을 고려하여 단면 확장을 검토하겠음.	반영
	- 신양천 No.15-16 구간(유선형 검토)	⇒ 신양천 No.15-16 구간은 단면확대에 의한 수리변화가 미미하여 당초 계획법선을 적용하였음.	원안반영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영준 위 원	- 장전천 No.2-5 구간(홍수벽 및 랜펠레버 등 검토후 최적방안 마련 필요)	⇒ 장전천 No.2-5 구간은 홍수벽 및 랜펠레버 등 최적방안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겠음.	반 영
	- 장전천 No.38-40 (단면확장 검토)	⇒ 장전천 No.38-40 구간은 단면확대에 의한 수리변화가 미미 하여 당초 계획법선을 적용하였음.	원안반영
	- 행교천 No.5, 11 구간(유선형 검토)	⇒ 행교천 No.5, 11 구간은 계획하폭을 고려하여 선형을 변경하였음.	반 영
	- 거정천 No.2+12 (하천교 확장 검토)	⇒ 거정천 No.2+12 지점 하천교는 수리검토 및 구조물 노후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량 확장 계획에서 제외하였음.	원안반영
	- 덕목천 No.12 부근, 배터천 No.19-21 부근(선형개선 검토),	⇒ 덕목천 No.12 지점은 호남고속도로 및 지방도 68호선을 통과하는 수로BOX구간으로 경간장 및 여유고가 부족하나, 교량 확장시 공사비가 과도해 금회 계획에서 존치로 계획하였으나,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확장여부를 검토하겠음. ⇒ 배터천 No.19-21 구간은 계획하폭을 고려하여 선형을 개선하겠음.	반 영
	- 조령천 No.1~2 부근(복개확장 검토)	⇒ 조령천 No.1~2 구간 복개BOX 확장을 검토하겠음.	반 영
	- 오작천 No.6 부근(우안 보축구간 소하천 구역으로 설정 검토)	⇒ 오작천 No.6 부근 우안은 도로부근 여유고 부족 구간에 대해 파라펫 옹벽계획을 수립하였음.	원안반영
	- 오작천 No.55-56 부근, 독방골천 No.22 부근(선형개선 검토)	⇒ 오작천 No.55-56 구간 계획하폭을 고려 선형을 개선하겠음. ⇒ 독방골천 No.22 구간 계획하폭을 고려 선형을 개선하겠음.	반 영 반 영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자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영준 위 원	- 보름치천 No.7~9 부근, 대목천 No.30 부근(하폭 확장 검토)	⇒ 보름치천 No.7~9 구간 계획하폭을 고려 하폭 확장을 검토하겠음.	반 영
	- 솔골천 No.13 부근, 백촌천 No.5 부근(하폭 확장 검토)	⇒ 대목천 No.30 부근 계획하폭을 고려 하폭 확장을 검토하겠음. ⇒ 솔골천 No.13 부근 계획하폭을 고려 하폭 확장을 검토하겠음. ⇒ 백촌천 No.5 부근 계획하폭을 고려 하폭 확장을 검토하겠음.	반 영 반 영 반 영
	- 버펄이천 No.12, 15 부근, 반암천 No.19+26부근 (선형개선 검토)	⇒ 버펄이천 No.12, 15 부근 계획하폭을 고려 하폭 확장을 검토하겠음. ⇒ 반암천 No.19+26지점 계획하폭을 고려 하폭 확장을 검토하겠음.	반 영 반 영
	- 장골천 No.9 부근(확장검토)	⇒ 장골천 No.9 지점은 도로 복개 수로BOX 구간으로 경간장 및 여유고가 부족하나, 교량 확장시 공사비가 과도해 금 회 계획에서 준치로 계획하였으나,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확장여부를 검토하겠음.	반 영
	- 쇠목천 No.4+3 부근(선형개선 검토)	⇒ 쇠목천 No.4+3 지점 계획하폭을 고려 선형을 개선하겠음.	반 영
	• 유로변경 재확인 구간 - 양지천 No.46 부근, 안삼천 No.22 부근(예나지 기준수로간섭 검토)	⇒ 양지천 No.46 지점은 양지소류지 하류부로 2017년 소하 천정비 개수공사에 따른 주민의견을 반영, 유수의 원활한 흐름을 고려 일부구간 유로 변경을 반영하겠음. ⇒ 안삼천 No.22 지점 좌안측 기준수로와의 접속부 계획을 수정 · 보완하겠음.	원안반영 반 영

□ 안전명 : 소하천 개수계획(안) 적정성 검토

지문위원	자 문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김영준 위 원	• 지류 유입부 처리방안 검토 - 안심천 No.40 부근 - 두사천 No.12부근 (지류부 선형 검토) - 주내천 No.0부근 (지류부 암거)	⇒ 안심천 No.40 지점 지류 유입부에 대한 접속부 계획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두사천 No.12 지점 지류 유입부에 대한 접속부 계획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 주내천의 경우 좌안측 지류부 암거가 당초 주천(지방)에 유입되었으나, 주내천 축제로 인해 주내천으로 유입되게 계획하였습니다.	반 영 원안반영
	• 하천 구간조정 검토 - 성발천 No.62+9부근 시점부 연장 검토	⇒ 해당 소하천 연장은 소하천 지정기준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된 연장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원안반영
	• 낙차공 검토 - 안골천 No.14~16 부근 낙차공 밀집으로 필요성 검토 필요	⇒ 안골천 No.14~16 구간에 대한 낙차공의 노후정도, 하상유지 기능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중단계획을 통해 철거토록 검토 하겠음.	반 영

상기와 같이 지문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12. 5 .

지문위원 : 김 영 준



13.3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설명회 시행에 관한 사항

13.3.1 주민설명회 시행공문 등

논산시 공고 제2018-1134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에 의거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18일

논 산 시 장

1. 계획개요

- 1) 계 획 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2) 계획범위 :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 3) 계획시행자 : 논산시장

2. 공람기간 및 장소

- 1) 공람기간 : 2018년 07월 25일 ~ 2018년 09월 10일
- 2) 공람장소 :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 및 각 읍·면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비 고
2018년 07월 25일 10:30시	논산시 채운면사무소	
2018년 07월 25일 14:00시	논산시 부적면사무소	
2018년 07월 26일 11:00시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2018년 07월 26일 14:00시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2018년 07월 27일 10:30시	논산시 은진면사무소	
2018년 07월 27일 14:00시	논산시 노성면사무소	
2018년 08월 08일 11:00시	논산시 연무읍사무소	
2018년 08월 08일 14:00시	논산시 연산면사무소	
2018년 08월 09일 11:00시	논산시 상월면사무소	
2018년 08월 09일 14:00시	논산시 가야곡면사무소	
2018년 08월 10일 11:00시	논산시 광석면사무소	
2018년 08월 10일 14:00시	논산시 양촌면사무소	

4. 주민의견 제출

- 1) 제출기간 : 공람 개시 후~공람 만료 후 7일 이내
- 2)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5. 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6. 상세한 내용은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 041-746-6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공고 제2018-1134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에 의거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18일

논 산 시 장

1. 계획개요

- 1) 계획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2) 계획범위 :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 3) 계획시행자 : 논산시청

2. 공람기간 및 장소

- 1) 공람기간 : 2018년 07월 25일 ~ 2018년 09월 10일
- 2) 공람장소 :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 및 각 읍·면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비고
2018년 07월 25일 10:30시	논산시 재운면사무소	
2018년 07월 25일 14:00시	논산시 부적면사무소	
2018년 07월 26일 11:00시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2018년 07월 26일 14:00시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2018년 07월 27일 10:30시	논산시 은진면사무소	
2018년 07월 27일 14:00시	논산시 노성면사무소	
2018년 08월 08일 11:00시	논산시 연무읍사무소	
2018년 08월 08일 14:00시	논산시 연신면사무소	
2018년 08월 09일 11:00시	논산시 상월면사무소	
2018년 08월 09일 14:00시	논산시 가야곡면사무소	
2018년 08월 10일 11:00시	논산시 광석면사무소	
2018년 08월 10일 14:00시	논산시 양촌면사무소	

4. 주민의견 제출

- 1) 제출기간 : 공람 개시 후 ~ 공람 만료 후 7일 이내
- 2)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5. 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6. 상세한 내용은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 041-746-6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논산시 공고 제2018-1134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제15조(설명회의 개최)에 의거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07월 18일

논 산 시 장

1. 계획개요

- 1) 계획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 2) 계획범위 :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 3) 계획시행자 : 논산시청

2. 공람기간 및 장소

- 1) 공람기간 : 2018년 07월 25일 ~ 2018년 09월 10일
- 2) 공람장소 :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 및 각 읍·면사무소

3.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일시	장소	비고
2018년 07월 25일 10:30시	논산시 재운면사무소	
2018년 07월 25일 14:00시	논산시 부적면사무소	
2018년 07월 26일 11:00시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2018년 07월 26일 14:00시	논산시 벌곡면사무소	
2018년 07월 27일 10:30시	논산시 은진면사무소	
2018년 07월 27일 14:00시	논산시 노성면사무소	
2018년 08월 08일 11:00시	논산시 연무읍사무소	
2018년 08월 08일 14:00시	논산시 연신면사무소	
2018년 08월 09일 11:00시	논산시 상월면사무소	
2018년 08월 09일 14:00시	논산시 가야곡면사무소	
2018년 08월 10일 11:00시	논산시 광석면사무소	
2018년 08월 10일 14:00시	논산시 양촌면사무소	

4. 주민의견 제출

- 1) 제출기간 : 공람 개시 후 ~ 공람 만료 후 7일 이내
- 2)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5. 관련도서 : 공람장소에 비치

6. 상세한 내용은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 041-746-633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매일신문(2018. 7. 18.)

충청신문(2018. 7. 18.)

☐ 주민설명회 사진(1/2)



채운면 - 2018. 07. 25 10:30



부적면 - 2018. 07. 25 14:00



강경읍 - 2018. 07. 26 11:00



벌곡면 - 2018. 07. 26 14:00



은진면 - 2018. 07. 27 10:30



노성면 - 2018. 07. 27 14:00

☐ 주민설명회 사진(2/2)



연무읍 - 2018. 08. 08 11:00



연산면 - 2018. 08. 08 14:00



상월면 - 2018. 08. 09 11:00



가야곡면 - 2018. 08. 09 14:00



광석면 - 2018. 08. 10 11:00



양촌면 - 2018. 08. 10 14:00

13.3.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논산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위 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설명회일시	2018.07.26.(목) 11:00	설명회장소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주 관	논산시	사 업 자	논산시장
연 번	주민성명	주 소	서 명
1	김민서		김민서
2	김민서		김민서
3	김민서		김민서
4	김민서		김민서
5	김민서		김민서
6	김민서		김민서
7	김민서		김민서
8	김민서		김민서
9	김민서		김민서
10	김민서		김민서
11	김민서		김민서
12	김민서		김민서
13	김민서		김민서
14	김민서		김민서
15	김민서		김민서
16	김민서		김민서
17	김민서		김민서
18	김민서		김민서
19	김민서		김민서
20	김민서		김민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논산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위 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설명회일시	2018.07.26.(목) 11:00	설명회장소	논산시 강경읍사무소
주 관	논산시	사 업 자	논산시장
연 번	주민성명	주 소	서 명
1	김민서		김민서
2	김민서		김민서
3	김민서		김민서
4	김민서		김민서
5	김민서		김민서
6	김민서		김민서
7	김민서		김민서
8	김민서		김민서
9	김민서		김민서
10	김민서		김민서
11	김민서		김민서
12	김민서		김민서
13	김민서		김민서
14	김민서		김민서
15	김민서		김민서
16	김민서		김민서
17	김민서		김민서
18	김민서		김민서
19	김민서		김민서
20	김민서		김민서

강경읍-1

강경읍-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논산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위 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설명회일시	2018.08.08.(수) 11:00	설명회장소	논산시 연무읍사무소
주 관	논산시	사 업 자	논산시장
연 번	주민성명	주 소	서 명
1	김민서		김민서
2	김민서		김민서
3	김민서		김민서
4	김민서		김민서
5	김민서		김민서
6	김민서		김민서
7	김민서		김민서
8	김민서		김민서
9	김민서		김민서
10	김민서		김민서
11	김민서		김민서
12	김민서		김민서
13	김민서		김민서
14	김민서		김민서
15	김민서		김민서
16	김민서		김민서
17	김민서		김민서
18	김민서		김민서
19	김민서		김민서
20	김민서		김민서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논산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위 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설명회일시	2018.08.08.(수) 11:00	설명회장소	논산시 연무읍사무소
주 관	논산시	사 업 자	논산시장
연 번	주민성명	주 소	서 명
1	김민서		김민서
2	김민서		김민서
3	김민서		김민서
4	김민서		김민서
5	김민서		김민서
6	김민서		김민서
7	김민서		김민서
8	김민서		김민서
9	김민서		김민서
10	김민서		김민서
11	김민서		김민서
12	김민서		김민서
13	김민서		김민서
14	김민서		김민서
15	김민서		김민서
16	김민서		김민서
17	김민서		김민서
18	김민서		김민서
19	김민서		김민서
20	김민서		김민서

연무읍-1

연무읍-2

13 - 46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illegible]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illegible]

광석면-3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논산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위 지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설명회일시		2018.07.27.(금) 14:00		설명회장소	논산시 노성면사무소
주 관		논산시		사 업 자	논산시청
연 번	주민성명	주 소			서 명
	1. 이				2. 이
	2. 이				3. 이
	3. 이				4. 이
	4. 이				5. 이
	5. 이				6. 이
	6. 이				7. 이
	7. 이				8. 이
	8. 이				9. 이
	9. 이				10. 이
	10. 이				11. 이
	11. 이				12. 이
	12. 이				13. 이
	13. 이				14. 이
	14. 이				15. 이
	15. 이				16. 이
	16. 이				17. 이
	17. 이				18. 이
	18. 이				19. 이
	19. 이				20. 이
	20. 이				21. 이
	21. 이				22. 이
	22. 이				23. 이
	23. 이				24. 이
	24. 이				25. 이
	25. 이				26. 이
	26. 이				27. 이
	27. 이				28. 이
	28. 이				29. 이
	29. 이				30. 이
	30. 이				31. 이
	31. 이				32. 이
	32. 이				33. 이
	33. 이				34. 이
	34. 이				35. 이
	35. 이				36. 이
	36. 이				37. 이
	37. 이				38. 이
	38. 이				39. 이
	39. 이				40. 이
	40. 이				41. 이
	41. 이				42. 이
	42. 이				43. 이
	43. 이				44. 이
	44. 이				45. 이
	45. 이				46. 이
	46. 이				47. 이
	47. 이				48. 이
	48. 이				49. 이
	49. 이				50. 이
	50. 이				51. 이
	51. 이				52. 이
	52. 이				53. 이
	53. 이				54. 이
	54. 이				55. 이
	55. 이				56. 이
	56. 이				57. 이
	57. 이				58. 이
	58. 이				59. 이
	59. 이				60. 이
	60. 이				61. 이
	61. 이				62. 이
	62. 이				63. 이
	63. 이				64. 이
	64. 이				65. 이
	65. 이				66. 이
	66. 이				67. 이
	67. 이				68. 이
	68. 이				69. 이
	69. 이				70. 이
	70. 이				71. 이
	71. 이				72. 이
	72. 이				73. 이
	73. 이				74. 이
	74. 이				75. 이
	75. 이				76. 이
	76. 이				77. 이
	77. 이				78. 이
	78. 이				79. 이
	79. 이				80. 이
	80. 이				81. 이
	81. 이				82. 이
	82. 이				83. 이
	83. 이				84. 이
	84. 이				85. 이
	85. 이				86. 이
	86. 이				87. 이
	87. 이				88. 이
	88. 이				89. 이
	89. 이				90. 이
	90. 이				91. 이
	91. 이				92. 이
	92. 이				93. 이
	93. 이				94. 이
	94. 이				95. 이
	95. 이				96. 이
	96. 이				97. 이
	97. 이				98. 이
	98. 이				99. 이
	99. 이				100. 이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illegible]

노성면-2

상월면-1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illegible]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illegible]

연산면-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illegible]

연산면-3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illegible]

별곡면-1

별곡면-2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사 업 명	논산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위 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설명회일시	2018.07.25(수) 10:30		설명회장소	논산시 재운면사무소
주 관	논산시		사 업 자	논산시청
연 번	주민설명	주 소		서 명
	유			유
	김			김
	양			양
	전			전
	진			진
	최			최
	김			김
	권			권
	윤			윤
	한			한
	이			이
	강			강
	박			박
	정			정

채운면-1

빈칸

[illegible]

13 - 51

13.3.3 주민의견 수렴내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논산시 판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사업자	논산시장
성명	양
의견제출자 주소	양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동매리 개천사업후, 산중리33번지 진입이 불가 다리공사, 재수공을 원함함사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배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8일
제출자 양 승태

논산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배당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논산시 판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사업자	논산시장
성명	오
의견제출자 주소	오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황화천 보육원으로 재 축로 필요함. <황화천> 선형 고비리 1204-4 호.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배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8일
제출자 오문숙

논산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배당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논산시 판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사업자	논산시장
성명	이
의견제출자 주소	이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선영리(노매리)에서 서원리까지는 도로가 편이 못하고 비가 많이 오면 도로가 범람해 농경지 침수됨. 선영리부터 이른바 관외해가 있어 도로를 1m 이상 높임 해주시고 농다리 개를 두 개 건설해주시고 바랍니다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배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제출자 선영리이장 이상준

논산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배당지 80g/㎡)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논산시 판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사업자	논산시장
성명	김
의견제출자 주소	김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주암리 3로 가에 위치한 도로 건너 침수구 침수로 인하여 인근에 관공리에서 침수 보통 개천의 수위를 고려 바람.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배당하는 곳에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청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14일
제출자 김인기

논산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주민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사업장/해당 행정기관

210mm×297mm(배당지 80g/㎡)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입 전락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사업자	논산시장
의견제출자	성명 <u>양영직</u> 주소 <u>논산시</u>
평가시초안에 관한 의견	<u>노산리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논산시에 7.1월 10일</u> <u>발령하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u>
공정의 개회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예상하는 곳여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시초안의 내용 및 공정의 개회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제출자 양영직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필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필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필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필수

210mm×297mm(최대지 80g/㎡)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입 전락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사업자	논산시장
의견제출자	성명 <u>박원석</u> 주소 <u>논산시</u>
평가시초안에 관한 의견	<u>교량 (신설) 노상 노면 No.4 ~ No.5 사이</u> <u>복거 (신설) 노상 노면 No.10 ~ No.12 사이</u> <u>노면 No.0 ~ No.2 노면 누각 "마옥 주민 의견"</u> <u>노안 석치 노상 .</u>
공정의 개회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예상하는 곳여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시초안의 내용 및 공정의 개회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제출자 박원석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필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필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필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필수

210mm×297mm(최대지 80g/㎡)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입 전락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사업자	논산시장
의견제출자	성명 <u>한일우</u> 주소 <u>논산시</u>
평가시초안에 관한 의견	<u>노산리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논산시에 7.1월 10일</u> <u>발령하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u>
공정의 개회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예상하는 곳여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시초안의 내용 및 공정의 개회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제출자 한일우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입 전락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사업자	논산시장
의견제출자	성명 <u>임성</u> 주소 <u>논산시</u>
평가시초안에 관한 의견	<u>노산리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해 논산시에 7.1월 10일</u> <u>발령하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u>
공정의 개회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예상하는 곳여 /표 합니다) : 필요 [] 불필요 [] - 이유(개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시초안의 내용 및 공정의 개회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제출자 임성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필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필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필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필수

210mm×297mm(최대지 80g/㎡)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table><tr><td>사업명</td><td>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td></tr><tr><td>사업장 위치</td><td>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td></tr><tr><td>사업자</td><td>논산시청</td></tr><tr><td>의견제출자</td><td>성원 동영길 주소 <u>충청남도 논산시 고사읍</u></td></tr><tr><td>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td><td>별의첨부 (별첨제도는 논산시 고사읍에 정해진 논리가 부족하리 인정함)</td></tr><tr><td>공정회 개최에 관한 의견</td><td>-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표의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이유(개회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td></tr></table>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의 내용 및 공정회 개최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제출자 <u>동영길</u> (서명 또는 인) 논산시청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수렴 여부 결정 →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결정에후 공개 주민: 시정/의/의안 결정기관 시정/의/의안 결정기관 시정/의/의안 결정기관 230mm×287mm(복합지 80g/㎡)	사업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사업자	논산시청	의견제출자	성원 동영길 주소 <u>충청남도 논산시 고사읍</u>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별의첨부 (별첨제도는 논산시 고사읍에 정해진 논리가 부족하리 인정함)	공정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표의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이유(개회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주민 의견 제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 제1항의 <u>비밀적</u> 1. 찬성 [1] 찬성서와 함께 (가) 농업협동조합에서 밭농사 2012년 12월 12일 1-8월까지 약 100,000㎡를 밭농사농지로 여정하여 수확정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제 (가)의 사유로 이해당사자이므로 의견제출이 정당함을 갖고있습니다 2. 전치상 이의 및 불응 (가) 의견제출이 환경영향평가에 큰 반영 있는데 토지이용권리자의 반영이 없습니다 ① 순회권 정지 ② 토지이용권리 기보 ③ 행정권리 ④ 국유지 관리(약정)
사업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위치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19개소, L=167.222km)												
사업자	논산시청												
의견제출자	성원 동영길 주소 <u>충청남도 논산시 고사읍</u>												
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별의첨부 (별첨제도는 논산시 고사읍에 정해진 논리가 부족하리 인정함)												
공정회 개최에 관한 의견	- 개최 필요성(해당하는 표의 √표 합니다) : 필요[] 불필요[] - 이유(개회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나)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토지의 환경영향 이득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여 전문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사회적 관계의 건의 (가) 교량의 설치 위치 관련 축전 7년 후인 9월 12일에 설치하여 국유지바람 축전 10월 12일에 설치하여 타인 사회 문제를 방지하여 하천 타인 사회 문제 (138)에서는 4차선 포장도로, 6.25 전쟁 행정분쟁이 2012년 12월 12일 11월 12일 이전입니다.	(나) 축전 7년 후인 9월 12일에 환경영향 축전 10월 12일의 우안은 수확부 계속하여 환경이 이득이 되고 있으므로 축전 12월 12일입니다. (다) 하천의 유로 변경 155-1번지인 변경하는 하천은 도로에 떨어져 있어서 농경지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및 순회권리자들은 지정하는 행정권리 12월 12일 축전 12월 12일이고 있으므로 11월 12일 155-1번지를 수확부 12월 12일 지정하여 수확부 변경하는 12월 12일 수확부 변경하여 환경영향평가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12월 12일												

(47쪽) {4} 결론 위 ①, ②, ③은 종합하고 제1차의 취지에 합목적성을 비교 평가하여 심개, 합당성 행정상치는 더 드림 2018. 8. 논산시청장 박종(국) 시무이사 이계수 공제위원장 손영익	빈칸
--	-----------

13.3.4 주민의견 반영여부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고
■ 상월면 양** ○ 통매천 개선사업 후 신창리 33번지 진입이 불가하여 교량신설 필요	○ 검토결과 통매 제1교는 하폭은 충분하며 여유고만 일부(19cm)가 부족하여 교량존치로 계획하였음. ○ 교량 진입로의 경사가 1:3.5, 1:6.4로 급경사로 이루어져서 차량진입이 어려우나, 교량여유고를 무시하고 재설치가 불가하며, 진입로 승상시 대안측 가옥 2채3(5-2대, 36대)의 진입이 불가하여 홍수방어벽으로 계획하였음.	미반영
■ 연무읍 오** ○ 황화천 보 유실로 재가설 필요	○ 해당 구간은 지방하천 황화천 제방 축조에 대한 의견으로 금회 소하천 정비종합계획과는 무관하며, 지방하천 황화천의 관리주체인 충청남도에서 건의할 사항임.	해당 없음
■ 광석면 이** ○ 신당3리(눈다리)에서 사월1리로 가는 도로 지반고가 낮아 강우시 농경지 및 눈다리마을 침수 피해가 있으므로 도로 지반고 높여주고, 교량2개소 신설 필요	○ 검토결과 해당구간은 하폭 및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으로 축제 및 보축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음. ○ 구조물의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검토내용에 따라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 노성면 김** ○ 구암2교 아래에 위치한 보로 인해 호우시 윗마을이 침수피해를 입게 되므로 보를 개방할수 있도록 조치 필요	○ 검토결과 해당구간은 하폭 및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으로 축제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음. ○ 구조물의 경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검토내용에 따라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반영
■ 노성면 양** ○ 두사소하천 하류부 집중호우로 피해입어 정비필요	○ 검토결과 해당구간은 하폭 및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으로 축제 계획을 수립하여 치수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였음. ○ 피해구간의 경우 빠른 시일 내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향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수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고
■ 양촌면 박** ○ 오미천에 교량(No4~5), 복개(No10~12), 호안(No0~2) 신설 요망	○ 수위 영향에 지장이 없도록 No.4+3지점에 단경간 교량으로 신설토록 계획에 반영하였음. ○ 해당 구간 좌안은 마을 진입도로 우안은 농경지로 환경적 측면 및 유지관리 측면, 홍수시 복개BOX 막힘 등으로 인한 월류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시 해당 구간의 복개 신설은 반영하기 어려움. ○ 일부구간 전석쌓기로 호안보강이 되어 있으며, 홍수위+여유고 기준은 만족하나, 호안 미설치로 금회 고수호안 지구로 계획토록 하였음.	반영
■ 양촌면 강**외 5인 ○ 안골천(No4) 교량 신설 요망	○ 해당구간 검토결과, 안골천 중점부인 안골1교에서 상류방향으로 제방길이 없어 접근이 불가하여 여유고 및 하폭은 충분하나, 소하천 유지관리 측면에 독마루폭을 확보토록 양안 보축지구로 계획하였으며 중점 No.3+2.0지점에 신설교량을 설치토록 반영하였음.	반영
■ 양촌면 강** ○ 안골천 No4 부근 오산리 127-3번지옆 도로 외 경계부 사면 옹벽설치 필요 ○ 안골천 No3~5 축제시공, No4 교량 필요	○ 해당구간 검토결과, 안골천 중점부인 안골1교에서 상류방향으로 제방길이 없어 접근이 불가하여 여유고 및 하폭은 충분하나, 소하천 유지관리 측면에 독마루폭을 확보토록 양안 보축지구로 계획하였으며 중점 No.3+2.0지점에 신설교량을 설치토록 반영하였음.	반영
■ 양촌면 임** ○ 백촌천 보축좌8지구 측점 No32 구간에 교량 신설 요망	○ 당초 측점 No.32+20지점은 낙차공 및 잠수교 형태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홍수시 반대편으로 접근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교량을 신설토록 계획에 반영하였음.	반영
■ 양촌면 박** ○ 버팽이천 교량(No20+10) 신설요망	○ 당초 No.20+10 지점 낙차공 겸 잠수교를 홍수시 통행이 가능하도록 신설교량을 계획하여 반영하였음.	반영

주민의견	반영내용	비고
■ 양촌면 이** ○ 반곡리 305-4(답)번지 옆 하천정비 추가로 전구간 요망(반곡천)	○ 기존 축제지구를 연장하여 제방 단절이 없도록 계획을 반영하였음.	반영
■ 농업회사법인 백촌(주) ○ 반암리 산12-1번지외 소유자로 반암소하천 No10의 교량을 설치할 경우 사유지를 경유해 본 토지에 접근해야 하는 바, 교량을 No7~9에 설치 요망	○ 반암천 NO.7 또는 NO.9 지점에 교량설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현황 상 해당 구간(NO.7~NO.9)에는 교량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좌안측 농경지에서 우안측 산지부로 교량을 신설할 어떠한 사유(도시계획, 도로의 연결 등)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교량신설 사유가 불분명하고, 현황상 교량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구간이므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상류부 반암1교와 반암2교가 근접하여 교량 이용 등을 감안하여 하류방향(NO.10 지점)으로 반암1교를 이동하여 재가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미반영
○ No10지점 우안은 수충부로 침식이 진행중이므로 축제구간 및 도로 연장 요망	○ 축점 NO. 10 지점 우안은 제방축제 구간으로 수위검토를 통해 하류방향 지류합류부 배수위 영향구간까지 축제토록 계획하였음.	반영
○ 하천과 도로가 떨어져있어 농경지의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하천의 유로를 변경하여 155-1번지를 소하천구역으로 지정, 수로를 변경하고 제방축제 및 교량 설치 요망	○ 『하천설계기준·해설(2009,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하도를 계획함에 있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 상태의 하천형상을 보전하는 계획을 세우도록 제시하고 있음. ○ 현재 해당 지역의 하천유로는 침식·운반·퇴적 작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 하천 스스로의 힘으로 하도를 형성하고 있어 인위적으로 유로를 변경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연 친화적인 하도계획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 또한, 155-1답을 관통하는 것으로 유로를 변경할 경우, 해당 토지의 농경지 활용은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유로를 변경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공익이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유로를 최대한 이용하는 법선 계획을 수립하였음.	미반영

13.3.5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사항



금강유역환경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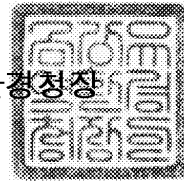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청[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1. 충청남도 하천과-2699('19.3.2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보완을 요청하오니 보완서가 빠른 시일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본 보완내용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내용 1부. 끝.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신자 충청남도지사(하천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주무관 서상우 과장 전결 2019. 5. 7.
조용재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과-3726 (2019. 5. 7.) 접수 하천과-3981 (2019. 5. 7.)

우 34142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28 칼릭스빌딩 9층 환경평가과 / <http://www.me.go.kr/gg/>

전화번호 042-865-0757 팩스번호 042-865-0759 / a1726111@me.go.kr / 비공개(5)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내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1. 총괄

- 동 사업은 논산시 관내 소하천 120개소(총연장 168.249km)에 대한 정비 종합계획으로 소하천의 생태계 현황을 면밀히 수록할 필요가 있으며, 과도한 치수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함.
- 아래와 같은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고 보완할 수 없을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 분야별 보완사항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소하천별 동식물 서식 및 분포현황 파악은 10년간 적용될 장기법정계획 수립 및 관리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나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였고, 특히 식물상의 경우 권역별 자료만을 포함하고 소산식물 목록이 미작성 되었으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현황 분석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물상의 경우 권역별(면) 소산식물 목록을 제시함을 지양하고 소하천별 목록 작성
 - 소하천별 보호수, 노거수, 법정보호종 서식현황 및 출현지점(GPS 좌표) 명기

나. 수환경의 보전

- 도시화율, 유역면적, 하도경사 등의 평가항목에 따른 적정 설계빈도 평가 결과, 120개의 소하천 중 82개의 소하천 설계빈도가 30년이 적정함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상위 하천기본계획, 치수안정성의 사유로 120개 소하천의 설계빈도를 50년으로 일괄 상향조정하였으나,

- 대부분의 소하천 경사가 급하지 않고, 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주로 분포하는 평지하천으로 기술되어 하천의 중요도 또한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도한 치수안전도 설정에 따른 치수중심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도록 설계빈도 설정계획 제시[일괄 상향계획 적용 시 타당한 사유(상위계획 빈도상향에 따른 영향 등) 추가 제시]. 끝.

인쇄 : 문서연 / 하천과 (2019-10-07 17:42:15)



금강유역환경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알림[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1. 충청남도 하천과-2699(2019. 3. 27)호, 7202(2019. 8. 26)호, 8090(2019. 9. 27)호와 관련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조치를 한 날 또는 조치계획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2] 서식으로 조치결과(조치계획)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본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1부.
2. 협의내용 반영결과(조치결과, 조치계획) 통보서 1부. 끝.

금강유역환경청장

수신자 충청남도지사(하천과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주무관	신영혜	과장	조용재	국장	전결 2019. 10. 7. 남병언
협조자					
시행	환경평가과-7831	(2019. 10. 7.)	접수	하천과-8366	(2019. 10. 7.)
우	34142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28(월평동)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 http://www.me.go.kr/gg/		
전화번호	042-865-0756	팩스번호	042-865-0759	/ shin16@me.go.kr	/ 대국민 공개

문서관리카드 하천과-8366 1/1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사업 개요 >

- 사업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GG20180508)
- 위치, 규모 : 논산시 관내 소하천(총 120개소, L=168.249km)
- 사업계획 : 축제 및 보축, 호안공, 교량공, 보·낙차공 등
- 계획수립자/승인기관 : 논산시 / 충청남도

I 총 괄

1. 본 협의내용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반영·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2. 획일적인 설계(계획)빈도 상향조정을 통한 홍수방어대책을 지양하고 하천이 갖는 자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기적, 광역적 측면에서 소하천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치수 목적과 아울러 생태하천으로의 보전과 복원 계획이 균형을 이루는 친환경적인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하천정비로 인한 생태적 영향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시행
3. 향후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우리 청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가. 시행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과 연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4.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이 있거나 있을 것이 우려될 경우 협의내용 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함.

2 세부 협의내용

1. 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가) 현지 및 문헌조사 결과 수달, 삵, 맹꽁이, 원앙, 독수리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보호종이 발견된 바,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서식 생물종의 특성을 고려한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본 조사결과 발생가능성이 예상되는 동·식물종의 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동·식물상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저감계획 수립

※ 현지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별표2]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양식을 참조하여 실시

나) 자연환경 보전이 필요한 공간역(생태자연도 1등급지, 야생생물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별도관리지역 등)에 연계된 소하천(주곡천, 상도1천, 학당천, 버팽이천, 오미천 등)은 개수계획을 지양, 축소 조정하여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 또한 환경사의 호안 조성, 생태통로* 설치, 공사 시 소음으로 인한 영향 저감 등 동물의 이동을 고려한 대책 마련

* 동물이 수계로 접근하거나 수계를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
(예시 : 동물이 이용가능한 다수의 소규모 교량 등의 간이 구조물)

다) 하천의 연속성 및 수생 생물의 이동에 장애를 주는 하천구조물(낙차공 등) 설치는 최소화하고 시설물이 낙후되어 기능이 불분명하거나, 연장에 비해 보 및 낙차공이 지나치게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철거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상태가 양호함에도 재가설하는 것으로 제시한 시설물에 대한 타당성은 실시계획 수립 시 재검토하여 반영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 시설물 재가설 시 생태적 공법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하천 상·하류 생태연결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어류 및 수생생물의 이동에 장애가 예상되는 곳에는 어도설치 계획을 반영
- 라) 하도준설 등 하상정비는 최소화하여 하천의 다양한 자연적 하상구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물 철거 등으로 인한 하상 훼손구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하상복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2)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가) 하천정비로 인해 발생 가능한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 하고 경관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3) 수환경의 보전
 - 가) '중권역별 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에 의한 목표수질(갑천 Ⅲ등급, 금강공주 Ⅱ등급, 논산천 Ⅱb 등급)과 수질현황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수질이 목표기준보다 양호한 소하천의 경우 현재의 수질 이상을 목표수질로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점·비점오염 발생원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오염원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하천수질 보전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적용
 - 나) 하천규모, 인근 토지이용계획, 재해이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치수계획을 수립·반영하여야 함.
 - 제방으로 인해 보호되는 면적이 작거나 기설제방의 여유고가 미미한 수준일 경우 월류 가능성을 검토 후 제방계획 수립
 - 상·하류의 연속적인 홍수소통능력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홍수위 저감 효과가 미미한 구간에 대해서는 확폭 및 제방 계획을 재검토하고 갈수기에도 적정 수심을 유지하도록 계획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다) 하천 내 토공 작업으로 인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토공은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실시하고, 과업구간을 구분한 후, 순차적 또는 계절별로 분리·시행하여야 함.

라) 본 계획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지역이나 할당시기 연기계획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함

나. 기 타

1) 하천정비 우선순위 설정 시 수질오염관리 필요 지역에 대한 우선시행, 환경적 민감지역에서의 사업은 후순위로 선정하는 등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가) 최근 정비사업이 완료된 소하천 구간은 금회 개수계획 구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치수 안전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후순위로 선정

2) 유로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전·후의 잠재적 위험성을 비교·검토하여 당위성을 확보하고, 전체적인 사업규모 및 시설물계획 변경내용에 대하여 총괄표를 작성 제시하여야 함.

3) 소하천별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수립 시 상위·연관계획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설치 필요성·관련 근거, 입지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재검토 후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끝.

13.4 공공측량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공간정보 산업의 원동력!” 공간정보산업협회

수 신 논산시장
(경유) 희망마을건설과장
제 목 공공측량성과심사 결과 알림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희망마을건설과-16415(2018.10.08)호로 심사 요청한 “논산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를 심사한 결과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공공측량성과 고시내용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 게재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을 실시하기 3일 전까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측량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 심사내용 각 1부.
2) 지상현황측량 성과심사 결과보고서 1부. 끝.

공 간 정 보 산 업 협 회 장

공간정보품질인증센터 심사팀 담당:문수훈 팀장:전왕규 실장직무대리:정의훈 센터장:윤경철
협조자

시 행 센터2019- 828 (2019. / .2/ .) 접수

우 073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237, 4층(신길동110-4) /http://www.kasm.or.kr

전화 : 02-2670-7188 전송 : 02-2670-7143 e-mail : shmun@kasm.or.kr / 공개

Me First(내가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13.5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인쇄 : 임장균 / 희망마을건설과 (2019-02-26 17:56:53)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논 산 시



수신 논산시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님 귀하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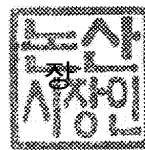
제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을 위한 서면심의 협조요청

1. 논산시 소하천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과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26조제3항에 의거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위한 의견을 수렴받아 추진하고자,
3. 다음과 같이 소하천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오니 불임 심의안건을 검토 하신 후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심의안건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제출기한 : 2019. 3.13.(수)

- 불 임 1.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안건 1부.
2. 서면심의 검토의견서(양식) 1부.
3. 소하천관리위원회 명단 1부. 끝.

논 산 시



★주무관

임장균

하천팀장

유영준

희망마을건설 전결 2019. 2. 26.

과장

윤천수

협조자

시행 희망마을건설과-2997 (2019. 2. 26.) 접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6333 팩스번호 041-746-6179 / W9A0Q7ZZ@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문서관리카드 희망마을건설과-2997 1/1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결과서

2019. 4

논산 논 산 시

심의의견 반영 결과

연 번	심의위원	전문 분야	심의의견	조치결과			비 고
				반영	부분 반영	미반영	
계			18	18	-	-	
1	전 민 호	논산시	-	-	-	-	위원장
2	윤 천 수	논산시	-	-	-	-	부위원장
3	윤 여 진	수자원	4	4	-	-	
4	이 규 환	건설환경	4	4	-	-	
5	윤 희 천	토 목	2	2	-	-	
6	박 혜 숙	환 경	3	3	-	-	
7	우 지 연	수자원	5	5	-	-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금회 과업은 향후 논산시 관내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것을 감안하여 장애여건과 관련계획을 충분히 고려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금회 12개 읍·면 120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관련실과 협의를 통해 소하천 주변 도시계획, 도로계획 등 관련계획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소하천정비 방향을 수립하였음.	반 영
향후 호안공법 결정은 구간별 유속, 소류력 등의 수리특성,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토록 보고서에 제시할 것	금회 개수계획에 따라 소하천별 계획지구별 유속 및 소류력 검토 결과를 토대로 계획지구별 표준단면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실시설계단계 호안공법 선정시 수리특성, 경제성, 시공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토록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반 영
노후화 되고 기능을 상실한 구조물은 철거토록 하고, 필요한 시설물에 한해 재가설 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함.	구) 교량 등 노후화 되고 기능을 상실한 구조물은 철거하였으며, 주민의견 및 관련실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설물에 한해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소하천 계획구간에 따른 법선 결정시 여유고 부족 구간에 국한하여 단구간 계획은 지양하고 독마루 확보방안 등 하천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바람.	하천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최소 독마루 폭 확보 및 기존 제방 연결 등을 고려하여 제방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상기와 같이 기초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03. 28 .

확인자 : 윤 여 진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유황분석은 분류하천의 유황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비유량법에 의해 실시하였으나, 가지야마 유출고 산정공식과 TANK모형 등 산정결과 비교를 통해 소하천별 유출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가지야마 유출고 산정공식, TANK모형 등을 이용하여 소하천별 유출특성을 분석하여 최종보고서에 수록하겠음.	반 영
주거지 관류구간의 소하천은 특히 면밀히 검토하여 가급적 편입되는 주거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특히 주거지 관류구간 소하천의 경우 편입되는 주거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법선 조정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제방축제 계획시 호안사면은 최대한 환경사로 계획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할 것	소하천별 호안사면 결정시 기존 사면경사, 하천의 접근성, 친수 및 경관, 생물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환경사로 계획하였음.	반 영
수충부 및 유속이 빠른 구간의 경우, 호안공법 선정시 강성호안을 제시하여 호안세굴 및 파괴에 안전하도록 할 것	수충부 및 유속이 빠른 구간의 경우, 호안세굴 및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성호안을 제시하였음.	반 영

상기와 같이 기초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03. 28 .

확인자 : 이 규 환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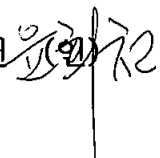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 대체적으로 잘 정리된 보고서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좀 더 보완 및 확인했으면 하는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본 계획의 수립배경은 수해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한 깨끗한 수질을 확보일 것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다양한 기초조사를 수행했습니다만 대표적인 비점오염원 중의 하나인 축사폐수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와 돼지 등의 축산 폐수는 양도 많지만 특히 유기물, 질소 및 인의 농도가 매우 높은 오염물질을 배출합니다. 또한 여러 방법을 통해 축산폐수의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높은 질소와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하고, 처리 또한 쉽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유역 내에 존재하는 소규모부터 대규모의 축사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조사 내용이 본 보고서에 포함되어 잠재적인 오염원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양호한 수질유지를 위해 수질보전방안을 정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였으며, 소하천유역의 오염원(가축분뇨) 현황 자료조사 내용을 제시하였음.	반 영 (첨부#1)

검 토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다음으로 제3장의 측량 부분입니다. 정확한 도면은 하천의 이수와 치수를 위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전 구간에 걸쳐 여러 형태의 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지형측량의 경우 축척 1:1000 지형도를 제작하였는데, 이때의 측량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단측량과 횡단측량을 GNSS로 한 것인지 아니면 level로 직접수준측량으로 한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근본적으로 GNSS로 얻은 타원체고(ellipsoidal height)와 level로 얻은 정표고(orthometric height)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하천에서의 물의 흐름에는 gravitational potential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한 정표고가 하천관리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근측량, 수준측량, 지형측량, 중단측량, 횡단측량에서의 표고(H) 값은 정표고 값을 사용하여야 하니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형 및 중·횡단 측량은 GNSS측량으로 실시하였으며, GNSS측량시 위성을 통해 국가기준점을 이용한 지역의 표고 조정 작업을 진행하므로 실제 측량시 보정된 정표고를 사용하였음. •또한, 도근점 성과는 직접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정표고를 취하였으며, GPS를 이용한 지형측량 및 중·횡단측량시에는 도근점의 표고를 확인하여 측량을 실시하였음.	반 영 (첨부#2)

상기와 같이 기초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04. 02.

확인자 : 윤 희 천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동의함. 다만, 아래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인위적인 하천 선형의 변경을 지양하고, 콘크리트 구조물 설치는 최대한 지양하도록 해야 함.	•제방선형 계획시 기존 하천선형을 그대로 유지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였으며, 노후화되고 불필요한 보 및 낙차공, 교량은 철거토록 하였음	반 영 (첨부#1)
•하천사업 특성상 수중생태계의 영향이 우려되는 바, 향후 사업시행 시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시기 등을 고려하여 공사를 실시하고, 여름철 우기시에 토사 유출 저감대책 수립 필요	•수중생물의 번식기 및 산란시기(3~5월 및 9~10월)와 겨울철새 도래기 등은 가급적 피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우기시에는 비닐 또는 부직포 덮기 등을 실시하여 토양의 침식을 방지토록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반 영 (첨부#2)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인접한 구간은 생태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보전이 필요한 지역(법정보호종, 보호수 출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지, 자연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의 소하천은 하천 생태계 건강성 및 하천생태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비계획을 최소화하였음.	반 영 (첨부#3)

상기와 같이 기초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04. 02.

확인자 : 박 해 속 (인)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계획하폭이 부족한 교량(안심천 제1철도교, 도장천 도장3교 등)을 충분히 확장하지 않아 병목구간이 발생하는 바, 근본적인 치수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함.	- 안심천 제1철도교는 강경역과 연무대역을 연결하는 지선 내 위치하고 있으며, 계획하폭 기준에는 다소 미달되나 여유고는 확보하고 있어 급회 준치하였으나, 상·하류 연결, 병목구간 발생 등을 고려하여 철도교 확장 가능여부를 관리청과 협의하겠음. - 도장천 도장3교의 경우 당초 1,000mm 흙관교로 급회 계획하폭에 맞게 교량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첨부#1)																						
홍수위표의 계획하폭 표기(-)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고, 계획홍수위 역전이 발생하는 하천(동산천, 왕우천, 창들천, 덕곡천, 채광천)은 수정하기 바람.	- 홍수위표의 계획하폭 표기(-)는 확장계획이 없는 구간을 표시한 사항이나, 현하폭과 동일하게 계획하폭을 숫자로 표기하여 수정하였음. - 동산천 등 계획홍수위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소하천을 조사하여 계획홍수위를 수정하였음.	반 영 (첨부#2)																						
일부하천(고양천, 송정천, 거정천)의 경우, 개수계획으로 인해 기존 하도단면의 축소가 발생하는 바 재검토하기 바람.	해당하천의 개수계획을 재검토하여 기존 하도단면이 축소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하도단면이 축소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음. <table border="1"><thead><tr><th rowspan="2">행정 구역</th><th rowspan="2">소하천명</th><th colspan="2">계획하폭</th><th rowspan="2">비고</th></tr><tr><th>당초</th><th>변경</th></tr></thead><tbody><tr><td>연산면</td><td>고양천</td><td>7.0m</td><td>8.0m</td><td></td></tr><tr><td>"</td><td>송정천</td><td>9.0m</td><td>11.0m</td><td></td></tr><tr><td>"</td><td>거정천</td><td>8.0m</td><td>10.0m</td><td></td></tr></tbody></table>	행정 구역	소하천명	계획하폭		비고	당초	변경	연산면	고양천	7.0m	8.0m		"	송정천	9.0m	11.0m		"	거정천	8.0m	10.0m		반 영 (첨부#3)
행정 구역	소하천명			계획하폭			비고																	
		당초	변경																					
연산면	고양천	7.0m	8.0m																					
"	송정천	9.0m	11.0m																					
"	거정천	8.0m	10.0m																					

검 토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 사정천 최상류부의 경우 낙차공이 상당 수 위치한 바, 설치목적에 적합한 구조물 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설치목적이 불분명한 구조물의 경우 하천 환경관리를 위하여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사정천 상류부 짧은 구간내 낙차공이 밀집하여 취수목적인 사정2낙차공과 하상보호 목적인 사정6, 10낙차공을 제외한 6개의 낙차공을 중단계획을 통해 철거토록 수정하겠음.	반 영 (첨부#4)
• 계획평면도에 소하천이 합류되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명을 수록하고, 복개구간 표기방법 및 계획법선이 상이하므로 도면을 통일하기 바람.	• 계획평면도에 소하천이 합류되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명을 수록하고, 복개구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복개시점, 복개종점으로 구분하여 표기토록 하겠으며, 소하천별 계획법선 표기방법을 통일하여 도면을 수정하겠음.	반 영

상기와 같이 기초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04. 02.

확인자 : 우 지 우지연

13.6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

13.6.1 경계소하천 협의

인쇄 : 임장균 / 희망마을건설과 (2019-08-19 16:21:19)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논 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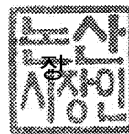
수신 계룡시장(안전총괄과장)
(경유)

제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관련 경계소하천 관리방법 협의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용역』과 관련하여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2(경계소하천 관리)에 의거 우리시와 귀 시 관할구역에 연접하여 흐르는 소하천(무주천)의 행정절차(소하천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이행을 위해 귀 시의 소하천 관리방법 결정 등 협의를 요청하오니,
3. 협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시면 '19. 6.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빠른 과업추진을 위해 기한 내 미제출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경계소하천 협의자료 1부. 끝.

논 산 시

주무관 임장균 하천팀장 유영준 희망마을건설 전결 2019. 5. 23.
과장 윤천수

협조자

시행 희망마을건설과-8594 (2019. 5. 23.) 접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6333 팩스번호 041-746-6179 / W9A0Q7ZZ@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문서관리카드희망마을건설과-8594 1/1

인쇄 : 임장균 / 희망마을건설과 (2019-06-03 12:50:12)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계 룡 시



수신 논산시장(희망마을건설과장)

(경유)

제목 경계소하천 관리방법 협의요청 회신

1. 논산시 희망마을건설과-8594(2019. 5. 23.)호와 관련입니다.
2. 귀시와 경계소하천인 무주소하천의 효율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2(경계소하천 관리)에 따라 우리시 검토의견을 회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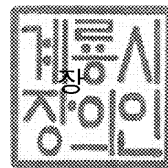
○ 경계소하천 현황

- 소하천명 : 무주소하천
- 연 장 : 1,775m(논산시 연산면 화악리 ~ 계룡시 엄사면 광석리)
- 경계지점 연장 : 계룡시 편입 하천연장 250m

○ 우리시 검토의견

- 종합계획 : 논산시에서 종합정비계획 수립 후 계룡시 구간에 대한 자료제공에 동의
- 소하천 지정 : 좌·우안의 경계가 명확치 않은 구간의 계룡시 소하천 지정은 무의미하며, 계룡시 양안이 편입되는 90m정도 구간의 소하천 지정은 불필요(현재와 같이 논산시 지정을 유지)
- 정비시행 : 논산시에서 소하천정비 추진 시 계룡시 편입토지는 계룡시에서 보상하고, 공사는 논산시에서 시행(점용허가 및 공유재산관리는 해당시군에서 관리)
- 관리방안 : 공사완료 후 관리는 행정구역 경계대로 관리. 끝.

계 룡 시



주무관 김정호 재해대책팀장 한상윤 안전총괄과장 박용복
 협조자 주무관 서문수미
 시행 안전총괄과-5964 (2019. 6. 3.) 접수 희망마을건설과-9163 (2019. 6. 3.)
 우 32823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46, 안전총괄과 (금암동) / www.gyeryong.go.kr
 전화번호 0428402254 팩스번호 0428402239 / djskalzzz@korea.kr / 대국민 공개

소중한 개인정보 나부터 지킵시다

문서관리카드 희망마을건설과-9163 1/1

13.6.2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

인쇄 : 임장균 / 회망마을건설과 (2019-04-07 13:41:30)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논 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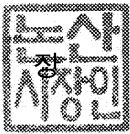
수신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귀하
(경유)

제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관련 관계기관 협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내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조사·분석하여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토지이용 편의 및 소하천 전산화를 도모하고자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4.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받고자 하며, 추후 과업수행사에서 방문할 계획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협의사항 1부.
2. 협의자료(별송) 1부. 끝.

논 산 시



★주무관

임장균

하천팀장

유영준

회망마을건설 전결 2019. 4. 5.

과장 윤천수

협조자

시행 회망마을건설과-5661

(2019. 4. 5.)

접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6333

팩스번호 041-746-6179

/ W9A0Q7ZZ@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문서관리카드회망마을건설과-5661 1/1

인쇄 : 임장균 / 희망마을건설과 (2019-04-07 13:40:37)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논 산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 관련 관계부서 협의

1. 우리과에서 현재 추진중인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과 관련하여 논산시 관내 소하천 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조사·분석하여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의 토지이용편의 및 소하천 전산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상기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의견을 수렴받고자 하며, 추후 과업수행사에서 방문할 계획이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협의사항 1부.
2. 협의자료(별송) 1부. 끝.

희망마을건설과장

수신자 도시재생과장, 도로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맑은물과장, 산림공원과장

★주무관 임장균 하천팀장 유영준 희망마을건설 2019. 4. 5.
과장 윤천수

협조자 주무관 최제용 희망마을팀장 김영천

시행 희망마을건설과-5685 (2019. 4. 5.) 접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6333 팩스번호 041-746-6179 / W9A0Q7ZZ@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문서관리카드희망마을건설과-5685 1/1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논 산 시



수신 충청남도지사(도로철도항공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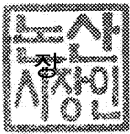
(경유)

제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협의 요청

1. 우리시에서는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하천의 관리,이용,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조사·분석하여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소하천을 경유하여 지나가는 “지방도 부분”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협의를 요청하오며, 협의의견을 받아 8월 초 소하천종합계획심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7.12(금) 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지방도 관련 협의자료 1부.(별송) 끝.

논 산 시



★주무관 임장균 하천팀장 유영준 희망마을건설 전결 2019. 6. 20. / 과장 윤천수

협조자

시행 희망마을건설과-10281 (2019. 6. 20.) 접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6333 팩스번호 041-746-6179 / W9A0Q7ZZ@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논 산 시



수신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구조물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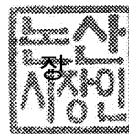
(경유)

제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협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하천의 관리,이용,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조사·분석하여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소하천을 경유하여 지나가는 “국도 부분”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협의를 요청하오며, 협의의견을 받아 8월 초 소하천종합계획심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7.12(금) 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일반국도 관련 협의자료 1부.(별송) 끝.

논 산 시



★주무관 임장균 하천팀장 유영준 희망마을건설 전결 2019. 6. 20.
과장 윤천수

협조자

시행 희망마을건설과-10279 (2019. 6. 20.) 접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6333 팩스번호 041-746-6179 / W9A0Q7ZZ@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 1 -

「활기찬 논산 행복한 시민」



논 산 시



수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구조물안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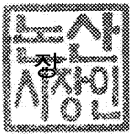
(경유)

제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협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하천의 관리,이용,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조사·분석하여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소하천을 경유하여 지나가는 “고속도로 부분”에 대하여 불임과 같이 협의를 요청하오며, 협의의견을 받아 8월 초 소하천종합계획심의를 추진할 예정으로 7.12(금) 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 임 고속도로 관련 협의자료 1부.(별송) 끝.

논 산 시



★주무관 임장균 하천팀장 유영준 희망마을건설 전결 2019. 6. 20. / 과장 윤천수

협조자

시행 희망마을건설과-10280 (2019. 6. 20.) 접수

우 32987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 (내동) / www.nonsan.go.kr

전화번호 041-746-6333 팩스번호 041-746-6179 / W9A0Q7ZZ@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

논 산 시 소 하 천 정 비 종 합 계 획 재 수 립 및 지 형 도 면 고 시 용 역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의견 조치결과

2019. 07.

논 산 시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논산시〉 도시재생과	• 해당 사업계획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서류(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등)를 작성하여 우리과와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토지이용규제법 제32조」 및 같은법 제8조에 의거 소하천대장 전산화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도로교통과	• 「논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논산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시설설계용역시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산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논산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향후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시설설계 용역시 재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안전총괄과	• 소하천 투자우선순위 선정시 하천의 위험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감안, 선정하여 하천재해가 최소화되도록 검토 필요	⇒ 소하천별 계획지구에 대한 치수경제성 분석을 통해 소하천 투자우선순위 선정시 하천의 위험성, 경제성 등을 충분히 감안, 선정하여 하천재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 현재 우리 부서에서 수행중인 논산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자료 협조요청	⇒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이 완료되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협조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논산시〉 희망마을 건설과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 시, 소하천 사업구간 내 기 설치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6항의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농로 등)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대체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변 영농 행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향후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시 소하천 사업구간 내 기 설치된 농업생산기반시설(구거, 농로 등)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자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산림공원과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과 관련하여 추후 사방댐, 계류보전 등 사업 실행시 별도 협의하고자 하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확정시 관련도면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이 완료되면 관련도면을 회신토록 하겠음.	반영
맑은물과	〈상수도시설에 관한 사항〉 -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라 논산시 수도정비종합계획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하시기 바라며, - 향후「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 상수도 시설물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이전 등 우리 협회가 필요할 경우 시설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시설에 관한 사항〉 -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라 논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하시기 바라며, - 향후「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 하수도 시설물에 저촉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이전 등 우리 협회가 필요할 경우 시설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계획 검토를 통해 논산시 수도정비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금회 과업대상 소하천 구간 내 상수도 시설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소하천 개수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소하천 시행계획시 시설물 이전 등이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관련계획 검토를 통해 논산시 하수도정비종합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금회 과업대상 소하천 구간 내 하수도 시설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소하천 개수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향후 소하천 시행계획시 시설물 이전 등이 필요할 경우,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충청남도〉 도로철도 항공과	지방도645호를 횡단하는 구간은 현재 도로개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관련부서인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시설1과와 별도 협의 후 정비계획 수립하여야 함.	⇒현재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두마-노성간 지방도 확포장사업 실시설계(2020년 5월 준공예정)용역이 추진중에 있어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수립하겠음.	반영
	충청남도 관리도로가 시설물 및 공작물 등으로 인해 저축될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인허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향후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시 충청남도 관리도로가 시설물 및 공작물 등에 저축될 경우 도로법에 따른 인허가 등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계획홍수위 상승 및 통수단면 부족에 따른 기존 횡단구조물(교량) 제가설 계획 수립시 주변 지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단 상향에 따른 통행불편 및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계획홍수위를 낮출수 있는 방안을 하여야 함. - 부득이 중단계획고 상승으로 구조물 제가설시 민원방지대책 수립	⇒지방도 통과구간 교량 제가설 계획시 소하천 중단, 제내지 주변 지형여건 등을 검토하여 중단 상향에 따른 통행불편 및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홍수위를 낮출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부득이 중단계획고 상승이 필요할 경우, 편입토지 최소화 등을 고려한 민원방지대책을 수립하겠음.	반영
논산국토 관리사무소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 관련 협의자료 검토결과, 우리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국도1, 4, 23호선에 설치된 기존시설물을 철거후 제가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세부계획이 제출되어야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소하천 시행계획 수립시 해당 시설물 세부설계 시행전에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한 도로 시설물 개축 반영요청 -도로시설물(수로암거) 구간의 추진 중인 사업이나 중장기 계획이 없으며, 소하천정비로 도로시설물 개축이 필요한 경우는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원인자인 하천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시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향후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 도로시설물(수로암거) 개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반영 시 사전 검토의견 -하천관리청이 직접 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시설물(교량)에 관한 기준 적합여부에 대하여 별도 협의를 하여야 함.	⇒향후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 도로시설물(교량)에 관한 기준 적합여부 등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 우리 공사 시설관리자와 사전협의를 득하시길 바랍니다.	⇒향후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 시설관리자와 별도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경지정리 된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 편입과 사업추진에 따른 자투리 농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향후 「소하천정비법」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시 경지정리 된 농업진흥지역의 우량농지 편입과 사업추진에 따른 자투리 농지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음.	반영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구 분	협 의 의 건	조 치 계 획	비 고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 소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기존 농로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부체도로 등을 설치하여 농업경영과 농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구거 등 농업용 시설의 편입 또는 폐지가 수반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대체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 전에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향후 소하천정비사업 시 기존 농로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적정 독마루폭 확보, 부체도로 설치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음. ⇒한국농어촌공사 관할 시설물 재설치시 시설관리자와 별도로 협의토록 하겠음. ⇒향후 소하천정비사업 시행전에 농지법 제34조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13.7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평화를 향한 동행, 모두를 위한 번영 충 청 남 도 수신 논산시청(희망마을건설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3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개최 알림 1. 희망마을건설과-17671(2019. 10. 23.)호와 관련됩니다. 2. 위호로 요청한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심의요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 및 제26조에 규정에 따라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리니, 3.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심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자료 사전 배부 및 설명을 실시하고, 사전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등 준비를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때 · 곳 : 2019. 11. 18.(월), 15:00 / 본관 3층 304호 회의실 나. 심의안건 : 1건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다. 심의방법 : 소집심의 붙임 1. 2019년 제3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추진계획 1부. 2. 심의 의건서(양식) 1부. 끝. 충 청 남 도 자 사 인 주무관 문서면 하천계획팀장 장경문 하천과장 홍승환 재난안전실장 정석환 협조자 주무관 박경수 주무관 최영진 시행 하천과-9100 (2019. 11. 1.) 접수 희망마을건설과-18201 (2019. 11. 1.)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하천과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2195 팩스번호 041-635-3071 / moon8119@korea.kr / 부문공개(5)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11.25~27. 부산)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table border="1"> <tr> <td>안 건 명</td><td>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td></tr> <tr> <td>심의일시</td><td>2019. 11. 18.(월), 15:00~</td></tr> <tr> <td>의결사항</td><td>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하는 것으로 의결함.</td></tr> <tr> <td>검토의견</td><td>의견없음.</td></tr> </table> 위와 같이 충청남도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2019. 11. 14. 심의위원 : 정 건 희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안 건 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일시	2019. 11. 18.(월), 15:00~	의결사항	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검토의견	의견없음.								
안 건 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일시	2019. 11. 18.(월), 15:00~																
의결사항	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검토의견	의견없음.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table border="1"> <tr> <td>안 건 명</td><td>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td></tr> <tr> <td>심의일시</td><td>2019. 9. 5.(목), 14:00~</td></tr> <tr> <td>의결사항</td><td>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제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td></tr> <tr> <td>검토의견</td><td> - 큰용맹이원, 사원원, 제비원, 절원, 상석원-하원의 기능을 상실했 p.2-144 다. 예도 강우시 우수의 흐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배터널 후 관리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추후 우수를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내에 두어야 할 것임. - 영주사천 상류는 사진으로 보아 하원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보이 p.2-153 고 여도의 폭도 상당한 규모 이상으로 보여지는 데, 소하천 구간 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 용원천의 하원연장을 병사지수지까지 포함시켜서 하원의 연속성 p.2-169 을 확보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함. 병사지수지는 저수지의 관리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표4.1-13】과 【그림 4.1-40】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 p.4-84 용도의 출처를 확인하기 바람 p.4-91 - 마산천과 소룡천, 양지천, 죽평천, 황화천과 도장천, 연산천과 감 p.4-136 절천, 황덕천과 어은천, 감천천과 구고문천, 감천과 조동천, 어곡천과 솔곡천, 양촌천과 인화천, 장성천과 절골천, 황암천과 옥곡천 등은 분류 하원의 경계나 제방과 상단기리 이격된 지점에 종령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분류 수위를 그대로 기점으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이격거리 만큼의 수위 상승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지정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 최근 10년간 기상에 대하여 최근(2018년)까지 조사하여 수록하 p. 기 바람. </td></tr> </table>	안 건 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일시	2019. 9. 5.(목), 14:00~	의결사항	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제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검토의견	- 큰용맹이원, 사원원, 제비원, 절원, 상석원-하원의 기능을 상실했 p.2-144 다. 예도 강우시 우수의 흐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배터널 후 관리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추후 우수를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내에 두어야 할 것임. - 영주사천 상류는 사진으로 보아 하원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보이 p.2-153 고 여도의 폭도 상당한 규모 이상으로 보여지는 데, 소하천 구간 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 용원천의 하원연장을 병사지수지까지 포함시켜서 하원의 연속성 p.2-169 을 확보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함. 병사지수지는 저수지의 관리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표4.1-13】과 【그림 4.1-40】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 p.4-84 용도의 출처를 확인하기 바람 p.4-91 - 마산천과 소룡천, 양지천, 죽평천, 황화천과 도장천, 연산천과 감 p.4-136 절천, 황덕천과 어은천, 감천천과 구고문천, 감천과 조동천, 어곡천과 솔곡천, 양촌천과 인화천, 장성천과 절골천, 황암천과 옥곡천 등은 분류 하원의 경계나 제방과 상단기리 이격된 지점에 종령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분류 수위를 그대로 기점으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이격거리 만큼의 수위 상승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지정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 최근 10년간 기상에 대하여 최근(2018년)까지 조사하여 수록하 p. 기 바람.	<table border="1"> <tr> <td>안 건 명</td><td>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td></tr> <tr> <td>심의일시</td><td>2019. 11. 18.(월), 15:00~</td></tr> <tr> <td>의결사항</td><td>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제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td></tr> <tr> <td>검토의견</td><td> - 소하천별 도달시간 산정시 평균유속이 4.5m/s를 넘는 구간이 많 p.6-99 이 나타나는데, 자연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임. 이로 인해 홍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기 바람. 【그림 6.2 17】 지방하천과의 비유경 분포 비교에서 본 비와 p.6.2 17 같이 급회 산정된 소하천의 홍수량 산정결과가 매우 불특정하고 범위 밖, 또는 범위가 매우 넓은 비유량이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난 하천의 홍수량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기 바람. 또한 그림은 좌표별로 중간에 수치를 넣어 검토하기 쉽도록 수정하기 바람. - 영주사천 대륙5로 등은 기존 하폭이 상·하부에 비하여 매우 넓 p.8-209 소하천 계획하폭이 현하폭과 같은 폭을 유지(【표 8.2-8】) 계획홍수, 하폭 및 기선제방과 같은 토목 계획하였음. 개수하는 교량이 상하부에 비하여 매우 협소하고 10m 이하인 경우, 돌발적인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 현상 등을 대비하여 상·하류와 폭이 같도록 사원사업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람. 【표 9.2-16】에 종면의와 사업비가 수록되었는데 【표 제9장 저수 p.9.2-12】의 편익과 【표 9.2-13】의 총사업비의 차이가 있어 경제성- 지점 비교하기 어려움. 각각의 표에서 표 9.2-16으로 산정되는 차점, 또는 설명이 더 충분히 수록되어야 함. - 심평천은 편익이 2000이 이상으로 산정되었고(【표 9.2-12】), 사업비는 7억 이하로 산정되어(【표 9.2-13】) 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보이나 【표 9.2-16】에 의하면 B/C가 4대1로 큰 차이를 나타냄. </td></tr> </table> 위와 같이 충청남도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2019. 11. 14. 심의위원 : 차 재 남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안 건 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일시	2019. 11. 18.(월), 15:00~	의결사항	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제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검토의견	- 소하천별 도달시간 산정시 평균유속이 4.5m/s를 넘는 구간이 많 p.6-99 이 나타나는데, 자연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임. 이로 인해 홍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기 바람. 【그림 6.2 17】 지방하천과의 비유경 분포 비교에서 본 비와 p.6.2 17 같이 급회 산정된 소하천의 홍수량 산정결과가 매우 불특정하고 범위 밖, 또는 범위가 매우 넓은 비유량이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난 하천의 홍수량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기 바람. 또한 그림은 좌표별로 중간에 수치를 넣어 검토하기 쉽도록 수정하기 바람. - 영주사천 대륙5로 등은 기존 하폭이 상·하부에 비하여 매우 넓 p.8-209 소하천 계획하폭이 현하폭과 같은 폭을 유지(【표 8.2-8】) 계획홍수, 하폭 및 기선제방과 같은 토목 계획하였음. 개수하는 교량이 상하부에 비하여 매우 협소하고 10m 이하인 경우, 돌발적인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 현상 등을 대비하여 상·하류와 폭이 같도록 사원사업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람. 【표 9.2-16】에 종면의와 사업비가 수록되었는데 【표 제9장 저수 p.9.2-12】의 편익과 【표 9.2-13】의 총사업비의 차이가 있어 경제성- 지점 비교하기 어려움. 각각의 표에서 표 9.2-16으로 산정되는 차점, 또는 설명이 더 충분히 수록되어야 함. - 심평천은 편익이 2000이 이상으로 산정되었고(【표 9.2-12】), 사업비는 7억 이하로 산정되어(【표 9.2-13】) 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보이나 【표 9.2-16】에 의하면 B/C가 4대1로 큰 차이를 나타냄.
안 건 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일시	2019. 9. 5.(목), 14:00~																
의결사항	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제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검토의견	- 큰용맹이원, 사원원, 제비원, 절원, 상석원-하원의 기능을 상실했 p.2-144 다. 예도 강우시 우수의 흐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배터널 후 관리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추후 우수를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체계 내에 두어야 할 것임. - 영주사천 상류는 사진으로 보아 하원의 규모를 가진 것으로 보이 p.2-153 고 여도의 폭도 상당한 규모 이상으로 보여지는 데, 소하천 구간 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 용원천의 하원연장을 병사지수지까지 포함시켜서 하원의 연속성 p.2-169 을 확보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함. 병사지수지는 저수지의 관리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표4.1-13】과 【그림 4.1-40】의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 p.4-84 용도의 출처를 확인하기 바람 p.4-91 - 마산천과 소룡천, 양지천, 죽평천, 황화천과 도장천, 연산천과 감 p.4-136 절천, 황덕천과 어은천, 감천천과 구고문천, 감천과 조동천, 어곡천과 솔곡천, 양촌천과 인화천, 장성천과 절골천, 황암천과 옥곡천 등은 분류 하원의 경계나 제방과 상단기리 이격된 지점에 종령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분류 수위를 그대로 기점으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이격거리 만큼의 수위 상승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지정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 최근 10년간 기상에 대하여 최근(2018년)까지 조사하여 수록하 p. 기 바람.																
안 건 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일시	2019. 11. 18.(월), 15:00~																
의결사항	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제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검토의견	- 소하천별 도달시간 산정시 평균유속이 4.5m/s를 넘는 구간이 많 p.6-99 이 나타나는데, 자연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임. 이로 인해 홍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기 바람. 【그림 6.2 17】 지방하천과의 비유경 분포 비교에서 본 비와 p.6.2 17 같이 급회 산정된 소하천의 홍수량 산정결과가 매우 불특정하고 범위 밖, 또는 범위가 매우 넓은 비유량이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난 하천의 홍수량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기 바람. 또한 그림은 좌표별로 중간에 수치를 넣어 검토하기 쉽도록 수정하기 바람. - 영주사천 대륙5로 등은 기존 하폭이 상·하부에 비하여 매우 넓 p.8-209 소하천 계획하폭이 현하폭과 같은 폭을 유지(【표 8.2-8】) 계획홍수, 하폭 및 기선제방과 같은 토목 계획하였음. 개수하는 교량이 상하부에 비하여 매우 협소하고 10m 이하인 경우, 돌발적인 홍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홍수 현상 등을 대비하여 상·하류와 폭이 같도록 사원사업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보기 바람. 【표 9.2-16】에 종면의와 사업비가 수록되었는데 【표 제9장 저수 p.9.2-12】의 편익과 【표 9.2-13】의 총사업비의 차이가 있어 경제성- 지점 비교하기 어려움. 각각의 표에서 표 9.2-16으로 산정되는 차점, 또는 설명이 더 충분히 수록되어야 함. - 심평천은 편익이 2000이 이상으로 산정되었고(【표 9.2-12】), 사업비는 7억 이하로 산정되어(【표 9.2-13】) 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보이나 【표 9.2-16】에 의하면 B/C가 4대1로 큰 차이를 나타냄.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안 건 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일시	2019. 11. 18.(월), 15:00~
의결사항	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검토의견	1. 기존 교량 능력검토(보고서 P8-480)에서 존치 또는 제거설을 결정할 때 수리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이용현황, 가설연도,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2. 소하천 교량계획시 하천구간내 교각 설치물 가급적 지양하고, 하천폭 및 경간장 등을 검토하여 하천의 통수 영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3. 잡수교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으므로 지양하고 가능한 설계기준에 적합한 교량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4. 교량 계획시 각 하천 지점별 홍수위 및 도로 편구배를 고려하여 종단 BL을 산정하고 종평면도에 명기하기 바람. 5. 복개구간은 철거를 우선 검토하고 복개구간을 최소화 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위와 같이 충청남도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2019. 11. .
심의위원 : 이 부 형 서명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안 건 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일시	2019. 11. 14.(월), 15:00~
의결사항	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검토의견	○ 전반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조사와 방향제시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아래 내용의 추가가 가능하다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p 8-553 수질 목표 부분에서 소하천의 수질 상태를 기술하고자 용한 수질자료확보가 가능하다면, 생대, 경관, 친수환경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제시할 것. - 일반적인 내용만을 기술하였고, 구체적인 목표수질이 제시되지 않음 ○ 8.4.2절의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에 대한 기술에서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대상 구간이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현황 설명 및 보전 및 복원 방법 제시가 필요함

위와 같이 충청남도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2019. 11. .
심의위원 : 이 은 형 서명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안 건 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일시	2019. 11. 18.(월), 15:00~
의결사항	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검토의견	1. 수질측정항목은 적절하나, 수질은 성수기 또는 비성수기, 강우 전후, 계절별, 시간별 측정일시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수질 및 저질조사가 2016년 8월 및 2017년 8월 사이(강우 후로 판단)에 연간 1회만 제하여 평균한 결과인데 이는 그 하천의 대표성을 나타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연간 1회만 측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통상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시 최소 2회, 최대 4회 까지 수질조사가 이루어지는데 1회 측정한 결과가 그 하천의 수질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수질은 채수시기(계절별, 시간별), 채수위치, 채수권의 강우현황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최소한 채수권의 3~5일간의 강우현황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 W-84 중산천을 예로 보면 수문이 31.1°로 자연하천의 수문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높은 값이 아닌지? 3. 하안이 식생으로 보호되어 있는 하천의 확폭시에는 기존 식생의 제거로 인한 토사유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방부의 보호를 위하여 석축 등의 호안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호안이 없는 구간과의 연결부에 대한 연속성(특히 환경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위와 같이 충청남도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2019. 11. .
심의위원 : 김 민 길 서명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안 건 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일시	2019. 11. 18.(월), 15:00~
의결사항	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검토의견	○ 논산시의 소하천의 수질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며, 지역 중 연부층에 위치한 소하천의 수질이 타 지역 하천에 비해 좋지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부층 양지천의 경우 BOD는 약간 나쁨, TOC는 13mg/L로 매우 나쁨으로 주변의 오염원 조사 및 하천수질정화방법을 적용하는 계획이나 예산 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TOC 기준 8mg/L, 조과 소하천인 대흥천, 모내천, 읍내천, 와동천, 한천은 하천수질정화방법을 적용하는 계획이나 예산 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200에 제시된 연부층 수질결과와 설명이 부각되었습니다. ○ 소하천은 친수 및 환경적 기능을 갖추어야하나 규모가 작은 하천에 친수공간확보를 위한 시설 및 계획은 부의미할 수 있으므로 간결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 논산시는 지역내 소하천이 건천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 하천은 건천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연계 또는 유지하기 위해 적정 물 양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하류에서 상류로 쉼터하는 설비, 빗물 모아두기, 환경용수 확보 등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 또한 침수피해를 고려하여 인공적인 건설은 배제하고 짧은 시간내에 복구가 가능한 자연적인 건설계획이 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

위와 같이 충청남도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2019. 11. . .

심의위원 : 채 선 하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의견

안 건 명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심의일시	2019. 11. 18.(월), 15:00~
의결사항	본 심의 안건을 (원안채택)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검토의견	별도 의견 없음

위와 같이 충청남도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제출합니다.

2019. 11. 18.

심의위원 : 조 성 서명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2019 기구주요기초조서에 참여해 주세요!(2019.11.6~11.25.)

충 청 남 도



수신 논산시청(희망마을건설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제3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1. 희망마을건설과-17671(2019. 10. 23.)호와 관련됩니다.

2.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과 관련,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요청 건에 대하여 심의결과를 불인파 같이 알려드리니, 심의조건 등에 대한 조치계획(결과) 수립 후 심의위원회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 주시고, 조치계획(결과)을 반영(보완) 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제3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심의의견서 각 1부.
3. 심의의견 조치결과(서식) 1부. 끝.

충 청 남 도



주무관 문서면 하천계획팀장 장경운 하천과장 홍승원 재난안전실장 전영 2019. 11. 21.
협조자 주무관 박경수 주무관 기두순 주무관 최양현
시행 하천과-9650 (2019. 11. 21.) 접수 희망마을건설과-19440 (2019. 11. 21.)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청 하천과 / http://www.chungnam.go.kr
전화번호 041-635-2195 팩스번호 041-635-3071 / moon8119@korea.kr / 부문공계(5)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아중 정상회의(11.25~27. 부산)



2019년 제3회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충 청 남 도
(하 천 과)

제3회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개요

- 1. 일 시 : 2019. 11. 18.(월) 15:00 ~ 16:30
- 2. 장 소 : 도청 본관 304호 소회의실
- 3. 심의안건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안) 수립
- 4. 참석위원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충청남도	위원장	정석완	제난안전실장
2	호서대학교	교 수	정건희	
3	㈜지유엔지니어링	전 무	차재남	
4	㈜기산엔지니어링	전 무	이부형	
5	㈜엔큐비	대 표	이은형	
6	㈜태성공영	소 장	김민길	
7	한국수자원공사	수석 연구원	채선하	
8	충남연구원 제난안전연구센터	센터장	조 성	

제3회 충청남도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 결과 : **조건부 의결**
- 주요 심의의결 사항

구분	주요 의견(조건사항)	비고
위원장	• 자연식생기 최소화, 홍수방어벽 설치 최소화, 원수공간조정 제검토하여 여간상 가능한 곳만 계획 필요함. • 도 종합검토의견 검토 반영	
정건희	• 별도의견 없음	
차재남	• 폐지 된 소하천의 경우 소규모 공공시설 지경 등 관리방안 마련 • 소하천별 도달시간 산정시 평균유속이 4.5m/s를 넘는 구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이부형	• 기존 교량 능력검토에서 준치 또는 제가설 결정시, 이용현황·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 복개구간은 절기를 우선 검토하고, 복개 구간을 최소화하는 계획 수립 필요함	
이은형	• 소하천 생태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황설명 및 방법 제시가 필요함	
김민길	• 수질은 제수 시기, 제수 전 강우현황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수 전 3~5일간의 강우현황 등을 보고서에 수록하기 바람	
채선하	• 수질이 나쁜 소하천의 경우 주변의 오염원 조사 및 하천수질정화 방법을 적용하는 계획이나 예상산정을 고려하기 바람 • 규모가 작은 소하천일 경우 원수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및 계획은 무의미 할 수 있으므로 검토 필요	
조 성	• 별도의견 없음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건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안)

검 토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큰용맹이천, 사현천, 계비천, 절천, 상석천 -하천의 기능을 상실했다 해도 강우시 우수의 흐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폐천된 후 관리 책임기관을 명확히 하고, 추후 우수를 안전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관리 체계 내에 두어야 할 것임.	•소하천정비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기준에 따라 소하천의 지령기준(목 2.0m 이상, 연장 500m 이상) 미달되는 소하천 5개소는 소하천 지정 폐지 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세천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만 영 (첨부#1)
•영주사천 상류는 사진으로 보아 소하천 규모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어도의 폭도 상당할 규모 이상으로 보여지는 데, 소하천 구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신규 지정 대상 소하천인 영주사천 시정부 상류는 제내지속으로 보호할 가용, 농경지는 없는 계류구간으로 현재 사방댐 및 계류보전사업은 통해 호인이 정비된 구간이며, 관리주체 구분 등을 감안하여 계류보전사업이 완료된 낙차공 하단을 영주사천의 시정부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제시하였음.	만 영 (첨부#2)
•용립천의 하천면장을 병사계수지까지 포함시켜서 하천의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불분명함. 병사계수지는 계수지의 관리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용립천의 중점부는 소하천 지정·변경·폐지와 관련한 충청남도청 협의결과에 따라 지방하천 턴포천과 수계의 원활한 관리목적으로 소하천 중점부를 병사계수지를 포함하여 소하천 구간 및 소하천 구역을 결정하였음.	만 영 (첨부#3)
•[표4.1-13]과 [그림4.1-40]의 도지이용현황 및 도지이용도의 출처를 확인하기 바람.	•[표4.1-14] 도지이용현황 및 [그림4.1-40] 도지이용도는 환경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도지리정보도(환경공간정보서비스, https://egis.me.go.kr)를 활용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자료출처를 보고서에 명시하였음.	만 영 (첨부#4)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건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제수립(안)

검 토 의 견	조 치 결 과	비 고
•마산천과 소용천, 양지천, 죽평천, 황화천과 도장천, 연산천과 감절천, 황덕천과 어은천, 견치천과 구요천, 감천과 조동천, 어죽천과 송골천, 양촌천과 인화천, 상성천과 절골천, 황암천과 육곡천 등은 분류하천의 경계나 제방과 상달거리 이격된 지점에 종결이 지정되어 있는 데, 이런 경우 분류 수위를 그대로 기점으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고, 이격거리 만큼의 수위 상승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정 사유를 설명하기 바람.	•과입대상 소하천의 분류하천은 대부분 『논산·강정·노성천권역 하천기본계획(2017. 04. 대전지방법국도청청)』에 포함된 28개 지방하천으로 분류하천의 하천구역 고지자료를 반영하여 소하천 경계 설정을 작성하였으며, 분류하천 합류부까지 측량을 실시하고, 해당지점을 소하천 종점부 No.0으로 적용한 후 분류하천의 기점수위로 홍수위 분석을 수행하였음.	만 영 (첨부#5)
•최근 10년간 기상에 대하여 최근(2018년)까지 조사하여 수록하기 바람.	•최근 2018년 기상현황을 조사하여 기상계황을 수록·보완하였음.	만 영 (첨부#6)
•소하천별 도달시간 산정시 평균유속이 4.5m/s를 넘는 구간이 많이 나타나는 데, 자연계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임. 이로 인해 홍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았는지,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기 바람.	•홍수량 산정시 적용한 도달시간 공식은 『설계홍수량 산정요령(국토교통부, 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속형 Kraven 공식을 적용하였으며, 급경사부(53/400)는 최대 유속이 4.5m/s, 완경사부(53/400)는 최소유속이 1.5m/s로 제하조치를 반영하였으나, 상월면 상도2천의 경우 수식 오류로 평균유속을 수정하여 보완하였음.	만 영 (첨부#7)
•[그림 6.2-17] 지방하천과의 비유량 분포 비교에서 본 바와 같이 급회 산정된 소하천의 홍수량 산정결과가 매우 불특정하고 범위 밖, 또는 범위가 매우 넓은 비유량을 크게 또는 작게 나타난 소하천의 홍수량을 검토하여 적정성을 판단하기 바람. 또한, 그림은 좌표별로 중간에 수치를 넣어 검토하기 쉽도록 수정하기 바람.	•급회 산정된 홍수량의 신뢰성 검토를 위해 본류인 지방하천 비유량값과 비교한 결과, 과입대상 소하천의 유역면적은 0.32 ~ 15.51km ² 본류인 논산시 관내 지방하천의 유역면적은 3.24 ~ 197.47km ² 로 비홍수량값은 50년 빈도에서 소하천 평균값 24ml/hm ² , 지방하천 평균값은 19 ml/hm ² 로 유역면적을 고려하면 비유량값은 비슷한 범위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또한, 농림청 강우관측소(우역관측소)를 적용한 『부여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2019. 02)』 소하천 하구지점의 비홍수량값과 비교결과, 부여군 소하천 비유량 평균값은 22ml/hm ² 로 비슷한 범위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비유량 분포 비교 그림내용에 중간에 수치를 기입하여 수정하였음.	만 영 (첨부#8)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영주사천 대목5교 등은 기존 하폭이 상·하류에 비하여 매우 협소한데 계획하폭이 현하폭과 같은 폭을 유지(표 8.2-8) 계획 중수위, 하폭 및 기설제방고 참조)토목 계획하였음. 개수하는 교량이 상·하류에 비하여 매우 협소하고 10m이하인 경우, 불법적인 통수 등 예측하기 어려운 통수 현상 등을 대비하여 상·하류와 폭이 같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도 검토하기 바람.	•대목5교는 앞쪽면에 위치한 대목천 시점 부의 감수교(D600mm, 등원교)로 돌발홍수를 대비하여 계획하폭 10m로 확장, 제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존 교량농배검토 내 영주사천으로 표기된 것은 오기로 대목천 내 대목5교로 수정하였음.	반 영 (첨부#8)
•[표 9.2-16]에 총면적과 사업비가 수록되었는 데 [표 9.2-12]의 편익과 [표 9.2-13]의 총사업비와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기 어려움. 각각의 표에서 표 9.2-16으로 선정되는 과정, 또는 설명이 더 충분히 수록되어야 함.	•금회 축제지구 사업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표 9.2-12] 소하천별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편익)과 [표 9.2-13] 소하천별 사업비 산정으로 나타난 표이며, 상기 [표 9.2-12] 편익과 [표 9.2-13] 비용을 토대로 6.0% 할인율(저수사업 부문), 분석기간 50년, 시설유발 잔존가치, 유적관리비, 비용의 현재가치화를 반영하여 [표 9.2-16] 소하천별 유량규도별 B/C 및 통합 지표로 나타내었음. 저수경제성 분석 관련 근거 자료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반 영 (첨부#10)
•섬발천은 편익이 200억 이상으로 선정되고([표 9.2-12]), 사업비는 7억 이하로 선정되어([표 9.2-13]) 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보이나 [표 9.2-16]에 의하면 B/C가 4 내외로 큰 차이를 나타냄.	•[표 9.2-12] 섬발천의 편익을 확인한 결과, 저수경제성분석 자료 오기로 [표 9.2-12] 소하천별 예상 연평균 피해경감 기대액과 [표 9.2-16] 소하천별 유량규도별 B/C 및 통합지표를 수정하였음.	반 영 (첨부#11)

상기와 같이 광역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확인자 : 차 제 보 (인)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기존 교량 농배검토(보고서 P.8-480)에서 콘크리트 또는 제가설을 건설할 때 수리학적 판단뿐만 아니라 이용현황, 가설연도,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바람.	•[표 8.3-18] 기존 교량농배검토에 이용현황, 가설연도, 유지관리 상태 등을 추가로 기입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보완하였음.	반 영 (첨부#1)
•소하천 교량계획시 소하천 구간내 교각 침체를 지양하고 가능한 설계기준에 적합한 교량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과업 대상 소하천의 대부분 최소 경간장 기준인 12.5m 미만으로 단경간 교량으로 계획되었으며, 교각 설치시 경간장 검토 등을 통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교량 제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첨부#1)
•감수교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있으므로 지양하고 가능한 설계기준에 적합한 교량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감수교 및 BOX교량은 단경간 교량으로 제가설하도록 계획하였음.	반 영 (첨부#1)
•교량계획시 각 소하천 저절면 홍수위 및 도로 편구배를 고려하여 종단 E.L.을 설정하고 동평면도에도 명기하기 바람.	•금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과업대상 소하천침비에 대한 기본방향(계획하폭, 계획홍수위, 하천시설물 계획)을 제시하여 향후 교량계획 등 소하천별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수록하였으며, 세부설계시 도로 편구배 등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기하였음.	반 영 (첨부#2)
•복개구간은 철거를 우선 검토하고, 복개구간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과업 소하천 구간 내 복개구간을 조사하여 철거를 우선 검토하였으며, 마을 진입로 등으로 이용되는 복개BOX의 경우 주민인원 등을 고려하여 통수단원 부족시 확장계획을 수립하였음.	반 영 (첨부#2)

상기와 같이 광역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확인자 : 이 부 행 (인)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전반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기초조사와 방향제시는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아래 내용의 추가가 가능하다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
•p 8-553 수질 목표 부분에서 소하천의 수질 상태를 기술하고(가용한 수질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면), 상태, 경관, 친수환경 등을 고려하여 목표수질을 제시할 것. -일반적인 내용만을 기술하였고, 구체적인 목표수질이 제시되지 않음	•금회 과업대상 소하천에 대한 1, 2차 BOD 기준 수질현황과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환경부고시 제2018-6호) 2018. 1. 18」과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각 소하천별 수질현황이 목표기준보다 양호한 상태의 하천은 현 상태를 유지하도록 목표수질을 제시하였음.	반 영 (첨부#1)
•8.4.2절의 소하천 상태보전 및 복원에 대한 기술에서 보전 및 복원이 필요한 대상 구간이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현황 설명 및 보전 및 복원 방법 제시가 필요함	•금회 소하천 공간환경 구분시 생태자연도, 범종보호종, 보호수 현황 등을 검토·확인하여 권수구역, 복원구역, 보전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자연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구간의 설정, 생태시스템 복원에 관한 고려사항, 사업시행으로 인한 생물 다양성 영향예측을 통해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소하천정비 실시계획시 참고토록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반 영 (첨부#2)

상기와 같이 광역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확인자 : 이 은 형 (인)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수질측정항목은 적절하나, 수질은 상수기 또는 비상수기, 강우 전후, 계절별, 시간별 측정일시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 수질 및 저절조사가 2016년 8월 및 2017년 8월 사이(강우 후로 판단)에 연간 1회만 계획하여 평균한 결과인데 이는 그 하천의 대표성을 나타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데 연간 1회만 측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동상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최소 2회, 최대 4회까지 수질조사가 이루어지는 데 1회 측정한 결과가 그 하천의 수질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 의문입니다. 또한, 수질은 채수시기(계절별, 시간별), 채수위치, 채수권의 강우현황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데 최소한 채수권의 3-5일간의 강우현황 등을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수질조사는 총2회에 걸쳐 수행하였으나, 보고서 편입 오기로 관련내용이 누락되어 보완하였음. •수질조사 기간 강우량은 1차의 경우 2016년 8월 25일 0.0mm, 25일 0.5mm(원장 조사시 강우관찰되지 않음), 2017년 8월 15일 0.15mm(원장 조사시 강우관찰되지 않음)이며, 2차의 경우 2018년 4월 10일 1.5mm, 11일 6.0mm이며, 상기사항을 보고서에 명기하였음. •수질측정시 채수권의 3-5일간의 강우현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보고서에 기술하였음.	반 영 (첨부#1)
•W-84 중산천을 예로 보면 수온이 31.1 °로 자연하천의 수온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너무 높은 값이 아닌 지?	•중산천 수온이 2016년 8월 1차 조사시 최고 수온을 보이는 하천, 일회고기온이 34.5°C까지 이르던 시기로 현장 측정자료를 확인한 결과, 측정오류는 아닌 것으로 확인됨. •또한, 측정결과 같은 2016 ~ 2019년 8월 논산지역 수질측정망 월평균 자료를 검토·확인한 결과, 30°C 이상의 수온을 보이는 하천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반 영 (첨부#2)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하천이 식생으로 보호되어 있는 하천의 특성상에는 기존 식생의 제거로 인한 토사유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제방부의 보호를 위하여 식속 등의 호안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호안이 없는 구간과의 연결부에 연속성(특히, 환경적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항후 제방 및 호안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저감대책을 세부설계시 반영할 수 있도록 보고서에 명시하였음. •항후 세부 실시계획서 기존 제방과의 연결성, 생태지함도 및 경관 등 해당지구의 특성과 주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인 호안공법이 선정되도록 보고서에 명시하였음.	반 영 (첨부#3)

상기와 같이 광역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확인자 : 김 민 길 (인)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논산시 소하천의 수질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며, 지역 중 연무읍에 위치한 소하천의 수질이 타 지역 소하천에 비해 좋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연무읍 양지천의 경우 BOD 약간 나쁨, TOC는 13mg/L로 매우 나쁨으로 주변의 오염원 조사 및 하천수질정화방법을 적용하는 계획이나 예산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TOC 기준 8mg/L 초과 소하천인 대흥천, 모내천, 읍내천, 와동천, 한천은 하천수질정화방법을 적용하는 계획이나 예산 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P.4-200에 연무읍 수질결과 설명이 누락되었습니다.	•수질 조사결과, 연무읍에 위치한 소하천 특히, 양지천 및 대흥천, 모내천, 읍내천, 와동천, 한천의 수질이 좋지 않은 경향이 보이고 있으며, 항후 소하천정비 사업시행시 추가적인 수질조사를 통해 하천수질을 확인한 후 주변의 오염원 조사 및 하천수질정화방법을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토록 보고서에 명시하였음. •연무읍 수질조사 결과 설명 및 수질조사 결과표를 보완하여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반 영 (첨부#1)
•소하천은 친수 및 환경적 기능을 갖추어야 하나 규모가 작은 하천에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 및 계획은 무의미할 수 있으므로 간결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공회 파입 대상 소하천의 구간별 공간관리 계획 수립시 친수구역은 대부분 중·하류부 추가 밀집구간과 같이 필요성이 요구되는 구간에만 설정하였으며, 그 외의 구간은 복원, 보전구역으로 설정하여 파단한 시설계획을 지양토록 하였음.	반 영 (첨부#2)
•논산시는 지역내 소하천이 건천화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소규모 하천은 건천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 또는 유지하기 위해 적정 물 양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하류에서 상류로 진행되는 설비, 밭물 모아두기, 환경용수 확보 등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소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방안을 제시하여 항후 세부 실시계획서 참고토록 보고서에 수록하였음.	반 영 (첨부#3)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결과

□ 안전명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안)

검 토 의 건	조 치 결 과	비 고
•또한, 침수피해를 고려하여 인공적인 건설은 배제하고 짧은 시간내에 복구가 가능한 자연적인 건설계획이 되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공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시 최대한 현 상태의 소하천 선형을 유지토록 하였으며, 제방축제 등은 꼭 필요한 구간에 한해 정비하고, 인공적인 건설을 최소화하도록 소하천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음.	반 영

상기와 같이 광역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 .

확인자 : 제 선 하 (인)

2020. 9. 18. - 10. 4.까지 충남 거점시에서 「2020제충세계문화엑스포」가 열립니다.

충 청 남 도

수신 논산시(희망마을건설과장)

(경유)

제목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승인 알림

1. 희망마을건설과-487(2020. 1. 9.)호와 관련됩니다.

2.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따른 승인 요청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갑론을박 제4조제5항에 따라 승인사항을 공포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 관련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승 인 대 상 :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나. 대상소하천 : /20개소 168,249km

다. 계 획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논산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내용 1부. 끝.

충 청 남 도